



간행물 596
Cat. No. 48861H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2023 세금 신고서 작성에 사용



목차

2023년의 새로운 정보	3
알림	3
챕터 1.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4
규칙 1-조정총소득 (AGI) 한도	4
규칙 2-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합니다	4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5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5
규칙 5-양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000 이하여야 합니다	5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7
챕터 2.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8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9
규칙 9- 귀하의 적격 자녀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3
챕터 3.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14
규칙 11- 나이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14
규칙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14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5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16
챕터 4. EIC 산정 및 청구	16
규칙 15-근로 소득 한도	16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	17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는 방법	17
챕터 5. EIC 불허	17
챕터 6. 상세한 예시	19
EIC 적격성 점검표	20
세금 관련 도움을 얻는 방법	19
2023 EIC표	24
색인	35

향후 진전 사항

간행물 출판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비롯한 이 간행물 596의 진전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는 [IRS.gov/Pub596](https://www.irs.gov/pub596)을 참고하십시오.

EIC란 무엇입니까?

EIC는 근로 소득이 \$63,398 미만인 특정 사람들을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EIC는 또한 귀하에게 환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IC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규칙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1. 근로 소득 세액공제 요약

먼저 이 열에 있는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아래 중 한 열의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이 열의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2장.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3장.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4장. EIC 산정 및 청구하기
1. 귀하의 조정총소득 (AGI)은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6,83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3,398),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2,91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478),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6,5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3,120)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7,64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2. 2023년 신고 기한 (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5.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 관련)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귀하의 투자 소득은 \$11,000 이하여야 합니다.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8. 귀하의 자녀는 자녀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9.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귀하의 적격 자녀를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일 수 없습니다.	11. 연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13.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4. 반드시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15.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6,83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3,398),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2,91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478),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6,5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3,120)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7,4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이 간행물이 필요합니까?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하는 특정 사용자는 EIC를 적격 여부를 확인할 때 양식 1040 설명서의 2단계 대신 이 간행물의 작업표 1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중 2023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작업표 1을 사용해야 합니다.

- 스케줄 E (양식 1040)를 제출함.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개인 자산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신고함.
- 양식 8814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신고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의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z에 소득을 신고함.
- 피동적 활동에 대한 소득 또는 손실이 있음.
- 양식 4797의 금액이 포함된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에 금액을 신고함.

위의 설명 중 어느 것도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세금 양식의 설명서에 EIC를 청구하고 EIC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이 필요하지 않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행물을 통해 EIC 적격 여부와 EI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IC에 적격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최소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근로 소득이 \$17,640 미만이라면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적격 자녀 없이 EIC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EIC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IRS가 세액공제를 산정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제출하는 양식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작업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IRS가 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4장을 보십시오.

특정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색인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색인 줄은 제목, 표 또는 작업표를 가리킵니다.

온라인에 도움말이 있습니까?

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RS.gov/EITC](https://www.irs.gov)에서 EITC 자격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ITC 자격 도우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새로운 정보

근로 소득 액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의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이고 \$56,83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3,398)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이고 \$52,91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478)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이고 \$46,5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3,120)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으며 \$17,64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귀하의 AGI 또한 위에 나열된 해당 금액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1](#) 및 [15](#)를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 금액.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최대 투자 소득 금액은 \$11,0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000 이하여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알림

단독 EIC. 귀하의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3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3장에 나오는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있다면 스케줄 EIC (양식 1040) 를 제출하십시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첨부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특정 공동 신고서에 대한 증가된 EIC.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자는 소득은 같지만 납세자 구분이 다른 사람보다 EIC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EIC 표에서 사용하는 열이 다릅니다. EIC 표에서 귀하의 EIC를 찾을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납세자 구분 및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 수에 맞는 올바른 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거하는 부부. 기혼이지만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더라도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3-배](#)

[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EIC는 특정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 기금을 조달한 주/지방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혜택이나 지원 적격 여부 또는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EIC로 인해 받는 모든 환급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빈곤 가정 임시 지원 (TANF).
- 메디케이드.
- 보충적 사회 보장 수당 (SSI).
-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 저소득층 주택.

또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환급금은 이를 수령한 후 최소 12개월 동안은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환급이 추후 각종 다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현지 혜택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EIC 목적 상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이 처리되는 방식이 변경에 대한 내용은 [근로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주 세액공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 또는 지방 소득 신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EIC를 제공하는 주 목록은 [IRS.gov/EITC](https://www.irs.gov/EITC)를 참고하십시오.

IRS가 의문을 제기한 EIC. IRS는 EIC 청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96의 스페인어 버전. 간행물 596(SP) Crédito por Ingreso del Trabajo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간행물 596입니다. [IRS.gov/Pub596SP\(영어\)](https://www.irs.gov/Pub596SP(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또는 [양식 및 간행물 주문](#)이나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후에 참조하여 이 양식 및 기타 IRS 양식 및 간행물을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실종 아동 사진. IRS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영어\)](https://www.nccmec.org) (국립 실종 및 학대 아동 센터)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선택한 실종 아동의 사진은 이 간행물의 비어 있는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아동을 알아보는 경우 800-THE-LOST (800-843-5678)로 전화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 및 제안. 이 간행물에 대한 의견과 향후 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IRS.gov/FormComments\(영어\)](https://www.irs.gov/FormComments(영어))를 통해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IRS 세금 양식 및 간행물 부서에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 1111 Constitution Ave. NW, IR-6526, Washington, DC 20224.

접수된 각 의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세금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수정 시 귀하의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의 주소로 세금 질문, 세금 신고서 또는 납부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이 간행물 또는 이 간행물 끝부분의 [세금 관련 도움 얻는 방법](#) 섹션에서 세금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 IRS 인터랙티브 세금 도우미 페이지 [IRS.gov/Help/ITA\(영어\)](https://www.irs.gov/Help/ITA(영어))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거나 나열된 카테고리를 보고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양식, 지침 및 간행물 받기. [IRS.gov/Forms\(영어\)](https://www.irs.gov/forms/eng)로 이동하여 최신 및 이전 연도 양식, 지침, 간행물을 다운로드합니다.

세금 양식, 설명서, 간행물 주문하기. [IRS.gov/OrderForms](https://www.irs.gov/orderforms)로 이동하여 최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주문합니다. 이전 연도의 양식 및 지침을 주문하려면 800-829-367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IRS는 최대한 신속하게 양식 및 간행물의 주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미 전송된 요청을 다시 제출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양식 및 간행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이 장에서는 규칙 1에서 7에 대해 다룹니다. EIC를 받으려면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간행물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의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장 또는 3장 (해당 사항)을 읽어 더 많은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 1-조정총소득 (AGI) 한도

귀하의 조정총소득 (AGI)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6,83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3,398),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2,91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478),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46,5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3,120),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7,64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조정총소득 (AGI). AGI는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1의 금액입니다.

AGI가 위에 나열된 해당 한도 이상이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간행물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AGI가 한도를 초과함. 귀하의 AGI는 \$50,000이며, 미혼이고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AGI가 \$46,560 이상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이고 AGI가 \$53,120 미만이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규칙 3 참조),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귀하와 배우자의 임금이 모두 AGI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래 규칙 7에 적용되는 부부 공동 재산 규칙과는 다릅니다.

규칙 2-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합니다

EIC를 청구하려면,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까지 사회 보장국 (SSA)에서 발급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까지 반드시 유효한 SSN이 있어야 귀하가 이 자녀를 통해 보다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2023년 세금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EIC 대한 자격이 있다면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세금 신고서 마감일까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려면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SSN이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이후에 발급되었거나, 오직 연방 지원 혜택을 신청 또는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되었거나, 취업에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SSN은 유효합니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혜택의 예는 메디케이드입니다.

TIP *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 보장 카드를 갖고있으며, 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신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 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SSN을 발급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유효한 SSN이 있는 것입니다.

INS의 승인 또는 DHS의 승인을 받은 취업에만 유효합니다. 사회 보장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IN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 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DH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하다고 쓰여 있는 경우, 유효한 SSN이 있지만, 그 승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SSN.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EIC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었고, 나중에 유효한 SSN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귀하는 EIC를 청구하기 위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나 배우자가 EIC에 유효하지 않은 SSN을 발급받았으나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전에 귀하나 배우자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 이 인쇄되지 않은 사회 보장 카드에 적격하다면,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 전까지 사회 보장 카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더라도 원본 또는 수정된 2023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SSN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가 있으면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ITIN은 IRS에서 SSN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SSN 없음.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는 경우,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를 입력하십시오. 기존 또는 수정된 2023년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SSN 받기.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게 SSN이 없는 경우, SSA에 양식 SS-5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SS-5를 온라인 [SSA.gov/forms/ss-5.pdf\(영어\)](https://ssa.gov/forms/ss-5.pdf), 해당 지역의 SSA 사무소에서, 또는 SSA에 800-772-1213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SSN이 없는 경우.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SSN이 아직 없는 경우, 신고서 마감일에 대한 자동 6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양식 4868,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자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4868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4868을 제출하는 대신, 신고서 마감일일까지 전자 결제로 자동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EIC 청구를 위해 반드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거하는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이 존재합니다.

별거한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 기혼이지만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2023년에 적격 자녀와 반년 이상을 함께 살았고 아래의 보기 중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3년의 마지막 6개월을 배우자와 별거했음, 혹은
-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며 2023년 말에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

이 요건들에 부합하다면 스케줄 EIC (양식 1040) 맨위에 있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TIP 귀하의 적격 자녀(들)을 명단에 올리려면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귀하의 신고서에 첨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IC 청구 목적의 적격 자녀 조건을 갖춘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여야 합니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였던 경우,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니라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닐 경우 "No"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하십시오.

규칙 5—양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을 제출하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외국 주택 비용을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는 외국이 아닙니다. 추후에, 간행물 54,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000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투자 소득이 \$11,000 이하여야만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11,00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작업표 1을 사용하여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이 작업표를 사용하여 EIC에 대한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이자 및 배당금	
1.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a의 모든 금액과 양식 8814, 라인 1b의 모든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2. _____
3.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3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3. _____
4. 신고서에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스케라인 1 (양식 1040), 양식 8814, 라인 8z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녀가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이 장에서 작업표 2를 사용하여 이 줄에 입력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4. _____
자본 이득 당기순이익	
5.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줄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	5. _____
6. 양식 4797, '사업 자산 판매' 라인 7에서 얻은 이득을 입력합니다. 그 라인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 (단, 양식 4797의 라인 8과 라인 9를 완료한 경우, 라인 9의 금액을 대신 입력합니다.)	6. _____
7. 이 작업표의 라인 5에서 이 작업표의 라인 6을 차감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7. _____
개인 자산의 로열티 및 임대 소득	
8. 스케줄 E, 라인 23b의 로열티 소득과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에 표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소득을 모두 입력합니다	8. _____
9. 스케줄 E, 라인 20으로부터 로열티 소득 관련 지출과 스케라인 1 (양식 1040) 라인 24b에 공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지출을 모두 입력합니다	9. _____
10. 이 작업표 라인 9의 금액에서 라인 8 금액을 차감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0. _____
피동 활동	
11. 피동 활동 (예: 스케줄 E, 라인 26, 29a ((h)열), 34A ((d)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소득, 또는 양식 4797, 라인 10의 "FPA"로 식별되는 일반적인 이득)의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1. _____
12. 피동 활동 (예: 스케줄 E, 라인 26, 29b ((g)열), 34b ((c)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손실, 또는 양식 4797, 라인 10의 "PAL"로 식별되는 손실)의 손실을 입력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2. _____
13. 이 작업표의 라인 11 및 12에 있는 금액을 합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3. _____
14. 라인 1, 2, 3, 4, 7, 10 및 13에 금액을 추가합니다. 합계를 입력합니다. 이것이 귀하의 투자 소득입니다	14. _____
15. 줄 14의 금액이 \$11,000보다 큼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설명서 3E/7로 이동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간행물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칙 7로 이동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설명. 라인 11 및 12에 입력할 금액을 계산할 때, 스케줄 E의 라인 26에 포함된 로열티 수입 (또는 손실) 또는 근로 소득에 포함된 소득 (또는 손실) 또는 이 작업표의 라인 1, 2, 3, 4, 7 또는 10에 포함된 소득 (또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E의 라인 26 또는 라인 40의 소득이 피동 활동에서 비롯됐는지 알아보려면 스케줄 E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스케줄 E, 라인 26에 포함된 임대 부동산 소득 (또는 손실) 중 수동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NPA"를 입력하고 그 소득 (또는 손실) 금액을 라인 26 옆의 점선에 기입하십시오.	

양식 8814에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이 포함된 경우에만 이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참고. 각 양식 8814에 대해 별도의 작업표 2를 작성합니다.		
1.	양식 8814, 라인 2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양식 8814,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2. _____
3.	라인 1에서 라인 2를 차감합니다	3. _____
4.	양식 8814, 줄 1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4. _____
5.	라인 3과 4를 추가합니다	5. _____
6.	자녀의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6. _____
7.	라인 6을 라인 5로 나눕니다. 결과를 소수점으로 입력합니다 (최소 세 자리 반올림)	7. _____
8.	양식 8814, 라인 12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8. _____
9.	라인 7과 라인 8을 곱합니다	9. _____
10.	라인 8에서 라인 9를 차감합니다. 작업표 1의 라인 4에 결과를 입력합니다	10. _____
(양식 8814를 두 개 이상 제출하는 경우, 작업표 1의 4행에 모든 작업표 2의 10행에 있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일을 하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라고 불립니다. 기혼자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일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귀하가 직원인 경우, 근로 소득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규칙 15에 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가 자영업자이거나 법정 직원인 경우, EIC 작업표 B 양식 1040의 설명서에서 귀하의 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근로 소득에는 다음 모든 유형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 가족 보육 혜택 및 입양 혜택과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이에 대해선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 자영업 순이익.
- 법정 직원으로써 받은 총소득.

임금, 급여, 양식(들) W-2 박스 1에 신고된 팁. 일을 해서 받은 임금, 급여, 팁은 양식 W-2의 박스 1에 신고됩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근로 소득 양식 W-2 박스1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종류에 소득에는 가사 노동자 소득, 고용주에게 신고되지 않은 팁 소득, 비과세 지급금을 EIC 청구 목적상 근로 소득에 포함하기로 선택했을 경우 특정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과세 대상 부양 가족 탁아 혜택, 양식 8839에서의 고용주 제공 입양 혜택, 양식 8919에서의 급여 및 다른 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b에서 1h에 신고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선택.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양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자영업 순이익. 다음과 같은 경우 자영업 순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 귀하는 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일 경우.

목사 주택. 목사 급여의 일부로 목사에게 제공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의 순이익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EIC의 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아래의 [승인된 양식 4361 또는 양식 4029](#)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법정 직원. 귀하가 법정 직원 박스 (박스 13)가 체크된 양식 W-2를 받았다면 귀하는 “법정 직원”입니다. 귀하는 스케줄 C (양식 1040)에 법정 직원으로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십시오.

파업 및 폐쇄 혜택. 현금 및 다른 자신의 (사실상 증거가 아닌) 공시가를 비롯한 파업 및 폐쇄 혜택으로서 귀하에게 지급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과세 대상입니다. 파업 및 폐쇄 혜택이 과세 대상이라면, 이 혜택은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h에 이 파업 및 폐쇄 혜택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된 양식 4361 또는 양식 4029

이 섹션은:

- 양식 4361, ‘목사, 종교 교단 구성원, 크리스편 사이언스 종사자의 자영업세 면제 신청서’, 또는
- 양식 4029,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면제 신청 및 혜택 포기 신청서’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승인된 양식은 사회 보장 세금에서 특정 소득을 면제합니다. 각 양식은 EIC의 근로 소득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됩니다.

양식 4361. 승인된 양식 4361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으로서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가 포함됩니다.

승인된 양식 4361이 있는 경우, 비과세 주택 지원금 또는 주택의 비과세 임대료는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직원이 아닐 때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주례비용과 연설 사례비 등이 있습니다.

양식 4029. 승인된 양식 4029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는 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로서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1a에서 1h에 신고되는 임금에서 스케줄 C 또는 F의 손실을 제하지 마십시오.

장애 혜택

장애로 인해 은퇴한 경우, 고용주의 장애 은퇴 플랜에 따라 받는 과세 대상 혜택은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은퇴 연령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장애가 없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연령입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 대상 장애 급여를 양식 1040 및 1040-SR의 라인 1h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받는 급여는 연금으로 과세되며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5a 및 5b의 과세 대상 연금 지급금을 신고합니다.

장애 보험금. 귀하가 보험료를 납입한 장애 보험에서 받은 지급금은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 고용주를 통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W-2 양식의 12번 박스에 코드 J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근로 소득이 아닌 항목의 예로는 이자 및 배당금, 연금,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장애 혜택 포함),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복지 혜택, 근로자 상해보험 혜택, 실업 수당(보험), 비과세 위탁 혜택 및 VA 재활 혜택을 포함한 보훈 급여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이런 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소 기간중 소득.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금액은 EIC를 계산할 때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비과세 근로장려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TANF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서 특정인이 (1) 민간 부문 고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 체험 활동(공공 주택 리모델링 또는 수리 포함) 또는 (2)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과 같은 특정 업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현금 지급금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신고할 자격이 있으며(참조 규칙 3),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EIC 근로 소득에는 해당 법에 따라 귀하의 소유로 취급되는 배우자의 모든 수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 신고에 총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더라도 EIC에 대한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주의 부부 공동 재산법에 의해 일부가 배우자의 소유로 취급되더라도,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네바다주, 워싱턴주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등록된 동거자의 경우,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EIC의 근로 소득에는 동거자의 수입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5를 참고하십시오.

CRP(보존유보플랜) 지급금. CRP 지급금을 받았을 때 사회 보장 퇴직 급여 또는 사회 보장 장애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CRP 지급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 군 급여. 군인의 비과세 급여는 EIC의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군인 급여의 예로는 전투 수당, 주택기본수당(BAH), 부식기본수당(BAS)이 있습니다. 추후에, 간행물 3, '군인의 세금 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전투 수당. EIC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2.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했다면, 이 장을 사용하여 적격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8~10](#)에 대해 다룹니다. 적격 자녀를 가지고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세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에게 EIC 자격을 부여하는 이 자녀가 2023년 신고서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이 규칙을 따르십시오.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신고서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 없음. 만약 [규칙 8](#)을 충족하지 못하면, 귀하에게는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3장을 읽고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오직 한 사람만 이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 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네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입니다. 네 가지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2. 나이,
3. 거주지, 그리고
4. 공동 신고서.

다음 단락은 각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테스트

적격 자녀가 되려면 자녀가

-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 (예: 귀하의 손주) 또는
- 형제, 자매, 남동생, 여동생, 의붓 형제, 의붓 자매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자녀 (예: 귀하의 조카)를 말합니다.

다음 정의는 관계 테스트를 명확히 합니다.

입양 자녀. 입양된 자녀는 항상 귀하의 자녀로 취급됩니다. 용어 “입양 자녀”는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진 자녀를 포함합니다.

위탁 자녀. EIC의 경우, 자녀가 공인 알선 기관 또는 판결, 법령 또는 관할 법원의 기타 명령에 의해 귀하에게 맡겨진 경우 위탁 자녀입니다. 공인 알선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국가의 허가를 받은 면세 단체 및
- 인디언 부족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가 인디언 아이들을 맡기도록 승인한 조직.

예. 12세인 D는 위탁 가정에 아이들을 맡기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2년 전에 귀하의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D는 귀하의 위탁 자녀입니다.

연령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1. 2023년 말 만 19세 미만이며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며,
2. 2023년 말 만 24세 미만이며 학생이고,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고;
3. 2023년 중 항상, 나이에 관계없이,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어야 함.

다음 예시와 정의는 연령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시 1-자녀가 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귀하의 자녀 S는 12월 10일에 만 19살이 되었습니다. S가 영구적이고 완전

히 장애가 있거나 학생이 아니라면,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 2-자녀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풀타임 학생이자 미혼인 만 23세의 형제자매 B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B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귀하와 배우자 모두 만 21세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B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시 3-자녀가 배우자보다 어리지만 귀하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이 예시는 예 2와 같지만 배우자가 만 25세라는 점은 다릅니다. B가 배우자보다 어리므로 귀하보다 어리지 않더라도 적격 자녀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의.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는 보통 연도 중 각 5개월의 일부 기간 동안 반드시

1. 정규 교직원, 연구 과정 및 정규 학생 기관이 있는 학교의 풀타임 학생; 또는
2. (1)에서 설명된 학교 또는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풀타임 농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연속적인 5개월 일 필요는 없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학교가 풀타임 출석으로 고려되는 시간 또는 과정에 등록된 학생입니다.

학교에 대한 정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칼리지, 대학이나 기술, 무역 또는 기계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훈련 과정이나 통신 교육 학교, 또는 인터넷 강의만 제공하는 학교는 EIC의 학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업 고등학교 학생. 학교의 강의 및 실습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민간 업계의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학생은 풀타임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1. 귀하의 자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의사는 병태가 지속되었거나 적어도 1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급여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동안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유의미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 급여나 이윤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최소한 최저 임금에 대한 경쟁적 근로 상황에서 풀타임 (또는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수행되는 파트타임)은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자신이나 집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취미, 기관 치료 또는 교육, 학교 출석, 클럽, 사교 프로그램 및 유사한 활동에 대한 무급 근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자녀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의 예에 대해서는, 간행물 524를 참고하십시오.

거주지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2023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서 귀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귀하가 자녀의 생활비 대부분을 지불했다라도 일년 중 절반 이상 함께 살지 않은 자녀에 대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IRS는 각 적격 자녀와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관할 수 있는 문서에는 학교와 택아 기록 및 자녀의 주소가 표시된 기타 기록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단락은 거주지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자녀는 거주지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장기 현역 복무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에 대해 EIC 목적상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 현역 복무 현역 복무 연장은 무기한 또는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 90일 이상 복무하지 않더라도 장기 현역 복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2023년에 출생했거나 사망한 자녀에 대해 2023년의 절반 이상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인 경우 2023년에 자녀가 살아있던 시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양 자녀. 2023년에 자녀를 입양했으며, 2023년에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졌거나 또는 이 자녀가 2023년에 귀하에게 맡겨진 적격 위탁 아동이었으며 2023년에 이 자녀 입양 또는 맡겨진 기간 중 반 이상이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이 있었던 경우, 이 자녀가 2023년에 귀하와 반년 이상 거주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괴된 자녀. 만약 자녀가 유괴된 전날 또는 돌아온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살았다면, 이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자녀가 귀하의 가족이나 자녀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괴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급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취급이 적용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는 다음 상황이 발생하기 전 연도입니다.

1. 자녀가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은 해, 또는
2.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

적격 자녀가 유괴되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KC” 를 스케줄 EIC의 라인 6에 있는 숫자 대신 입력합니다.

공동 신고서 테스트

이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녀는 해당 연도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외.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만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 1—자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만 18세인 자녀를 부양했고, 자녀의 배우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한 해 동안 \$25,000를 벌었습니다. 자녀의 부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 2—자녀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 18세인 자녀와 만 17세인 자녀의 배우자는 파트타임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동 신고서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3—자녀가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2와 같지만 자녀의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124의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신고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기혼 자녀. 자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연말전에 결혼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 귀하가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2.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인 경우.



사회 보장 번호 (SSN).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이 적격 자녀는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하며, 2023년에 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망 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보여주는 병원 기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적격 자녀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2. 적격 자녀의 사회 보장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 이라고 쓰여 있고 연방 기금 혜택 수급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경우, 또는
3. SSN 대신 적격 자녀가
 - a.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ITIN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 b.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는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될 자녀에 대한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입양 부모에게 발급됩니다.

적격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유효한 SSN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S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2를 참고하십시오.

TIP 귀하의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 보장 카드를 갖고 있으며, 자녀의 이민 신분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 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TIP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귀하에게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9— 귀하의 적격 자녀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한명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중 오직 한 명만이 실제로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자녀를 적격 자녀로 사용하여 다음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녀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2. 세대주 납세자 구분
3.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부양가족 착아 혜택의 제외.
5. EIC.

상대방은 이 적격 자녀를 근거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상대방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나누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누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귀하의 배우자이며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 한 자녀를 방금 나열된 다섯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적용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의 목적상 “부모”라는 용어는 어느 한 개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개인을 입양하지 않은 한, 의붓부모 또는 위탁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만 자녀의 부모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함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 부모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부모 둘 다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경우, IRS는 자녀를 1년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한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자녀가 각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이 같을 경우, IRS는 자녀를 해당 연도의 AGI가 가장 높은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자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지만 자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녀 부모의 최고 AGI보다 그 사람의 AGI가 높은 경우에만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TIP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3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되는 경우,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은 둘 중 누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에서 예시 12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3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어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를 사용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상대방이 자격이 없거나 소득 또는 AGI가 너무 높은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예시 6와 예시 7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 이 자녀를 통해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다섯 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이 자녀를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다음 예는 귀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자녀가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귀하와 만 2세 자녀 S는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며 AGI는 \$9,0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파트타임으로 번 \$9,000이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유일한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22,000이었고 AGI는 \$22,000입니다. S의 다른 부모는 귀하나 S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는 귀하와 귀하의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만 EIC (그리고 적격한 사람인 경우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S는 S의 다른 부모를 포함하여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귀하가 S를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S를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2—부모가 조부모보다 AGI가 더 높은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AGI가 \$25,000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귀

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는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귀하만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두 명이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자녀의 부모로서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S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모가 됩니다. IRS는 귀하의 부모가 EIC에 청구하는 것과 S를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불허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17,640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를 위한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4—적격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누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단, 귀하에게는,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에게 적격 자녀인 다른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각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으면 귀하의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청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 명의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다른 두 명의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5—납세자가 적격 자녀인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가 만 18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귀하가 귀하의 부모의 적격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논의할 규칙 10으로 인해,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으며 S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만이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S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하기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귀하가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S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귀하와 S를 EIC에 대한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6—조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근로 소득으로 \$50,000를 벌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의 소득이 EIC를 청구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오직 귀하만이 S를 사용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7—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근로 소득이 \$50,000이고 AGI가 \$50,500라는 점이 다릅니다. EIC를 청구하기에는 귀하의 소득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도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8—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귀하의 만 10세 자녀, J는 2023년 8월 1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이사 나갔습니다. 8월과 9월에 J는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J는 J 다른 부모인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J는 귀하와 배우자 둘다의 적격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J는 반년 이상 두 사람과 함께 살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 연령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귀하와 배우자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또한 서면 분리 합의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개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배우자는 귀하가 J를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 귀하의 배우자가 앞서 나열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J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적격한 세금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J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3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고 2023년 말에 별거 중 이었더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3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자녀 및 부양 가족 탁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9—별거 중인 부모가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8과 같지만 귀하와 배우자 모두 J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오직 배우자만이 J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자녀는 귀하보다 배우자와 더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별거 중인 배우자이며 적격 자녀가 없는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 또한 부부 개별 신고이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3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으며, 2023년 말에 별거 중 이었더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3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자녀 및 부양 가족 탁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10—미혼 부모의 경우. 귀하와 만 5세 자녀, L 그리고 L의 다른 부모는 일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와 L의 다른 부모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L은 귀하와 L의 다른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L의 다른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소득과 AGI는 \$12,000이며, L의 다른 부모의 소득과 AGI는 \$14,000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L의 다른 부모는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즉, L의 다른 부모가 L을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 청구에 L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L을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미혼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0과 같지만 귀하와 L의 다른 부모 둘다 L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L의 다른 부모만 L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의 다른 부모의 AGI인 \$14,000가 귀하의 AGI \$12,00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2—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귀하와 형제자매의 자녀인 만 7세 M은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이며 AGI는 \$9,3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원은 파트타임 직장입니다. 귀하 부모의 AGI는 \$15,000입니다. 귀하 부모의 유일한 소득원은 직장입니다. M의 부모는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AGI가 \$9,000 미만이며, 귀하 또는 M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M은 귀하와 어머니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만이 M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인 \$15,000가 귀하의 AGI \$9,300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녀는 비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1. 부모가
 - a. 이혼 했거나 별거 유지령에 의해 법적으로 분리된 경우;
 - b.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분리된 경우; 또는
 - c. 2023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져 살았을 경우.
2. 자녀는 부모로부터 한 해 동안 절반 이상을 지원받았을 경우.
3. 해당 아동은 2023년의 절반 이상을 한 명 또는 두 명의 부모에게 양육된 경우.
4. 다음 둘중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
 - a. 양육 부모는 양식 8332에 서명하거나 또는 자녀를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에 서명하고, 비양육 부모는 양식 또는 진술을 자신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1984년 이후와 2009년 이전에 이혼 법령 또는 별거 합의가 발효된 경우, 비양육 부모는 양식 8332 대신 법령 또는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b. 2023년에 적용되는 1985년 이전 이혼 법령 또는 별거 유지 또는 서면 별거 합의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는 2023년 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600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을 참고하십시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가 비양육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비양육 부모만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또는 다른 부양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한 경우 양육 부모 또는 다른 적격 납세자만 자녀를 EIC의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는 간행물 501에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에 타이브레이커 규칙 적용*을 참고하십시오.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 (예: 귀하의 부모, 보호자 또는 양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2. 귀하가:
 - a.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 b.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학생이고,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또는
 - c.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이며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그 사람과 함께 1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4. 귀하는 해당 연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오직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o”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하십시오.

예시.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2세이고, 미혼이며, 직업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귀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고 \$5,700를 벌었습니다. 귀하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시 1-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지난 예와 동일합니다. 단,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는 \$1,500의 임금을 받았고, 부모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EIC 또는 기타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2와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적격 자녀가 없고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을 사용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11**에서 **규칙 14**를 설명합니다.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네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면, 적격 자녀가 있습니다.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고 적격 자녀와 함께 EIC를 청구하지 않으면,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한 명만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이브레이크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 나이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귀하는 2023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2023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해당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다면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1958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1999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1958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1999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나 배우자 둘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 를 기입하십시오.

예시 1. 귀하는 만 28세이며 미혼입니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시 2—배우자가 나이 테스트에 부합함. 귀하는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만 23세이며 귀하의 배우자는 만 2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2023년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2023년 말에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였거나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자신의 25번째 생일 전날에 만 25세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1999년 1월 2전에 출생했다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3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예시 1. 귀하는 기혼이며 2023년 8월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만 6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2023년 11월에 만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만세 65세 미만이었으므로, 귀하는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시 2. 귀하의 배우자는 1998년 2월 14일에 출생했고 2023년 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사망 시에 만 25세로 고려됩니다. 허나,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2023년 2월 12일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만 25세가 아닌 것으로 고려되며 2023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아닙니다.

납세자의 사망. 2023년에 사망한 납세자는 사망 당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었다면 연령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25번째 생일 하루전에 만 25세가 된 것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납세자가 1999년 1월 2전에 출생했다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3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규칙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이름 하단에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또는 "Someone can claim your spouse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간행물 501에서 부양가족 청구 규칙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고서에서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오직 원청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한 추정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2023년에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귀하는 일을 했고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는 \$7,500를 벌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귀하가 \$2,000를 벌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 1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신고서. 기혼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예시 1—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만 26세입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2—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 1과 동일합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아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63의 EIC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이기 EIC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는 귀하 또는 귀하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 (귀하의 부모, 보호자, 양부모 등)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 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2. 귀하가
 - a.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 (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 b.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 (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 c.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해당 납세자와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 귀하는 해당 연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를 입력합니다.

예시.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6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3일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귀하는 일년 동안 \$5,000를 벌었고 본인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신고서. 기혼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시 1-신고서가 필요 없는 경우.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7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으며, \$13,000의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자녀가 없으며 본인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1,500를 벌었고 임금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시 1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EIC 또는 기타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아버지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시 2와 동일합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집 (과 배우자의 집,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 일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No” 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의 집은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다면,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현역 복무의 연장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 (2장의 설명 참조)에 대해 EIC는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EIC 산정 및 청구

EIC를 청구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장의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귀하의 근로 소득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EIC를 산정을 위해서 해당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 15-근로 소득 한도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6,83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3,398),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2,91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478),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46,5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3,120),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7,64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급여, 팁,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및 자영업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가족 혜택 및 입양 혜택과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에서 **규칙 7**을 참고하십시오.

근로 소득 산정. 귀하가 자영업자, 법정 직원, 또는 스케줄 SE (양식 1040)를 제출하는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인 경우, 라인 27에 대한 설명을 위해 양식 1040의 5단계에 있는 작업표와 양식 1040 설명에 있는 EIC 작업표의 파트 B를 작성하면 귀하의 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단계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하기 전에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 둘 중 해당되는 내용 참조를 명심하십시오.

성직자. 귀하가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성직자이고 해당 스케줄 라인 2의 금액이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에 신고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설명서,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합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Clergy” (성직자)를 기입하십시오.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이란 교회 또는 적격 교회 관리 조직의 직원 (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 제외)을 의미하며, 고용주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교회 직원으로 임금을 받았고 스케줄 SE의 라인 5a와 양식 1040, 라인 1a에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또는 1040-SR 설명서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하십시오.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 양식 1040 설명서 라인 27의 **5단계**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할 때,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s의 소득에서 제외시킨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입력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선택했다면 -0-을 입력하십시오. 이 지급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5를 참고하십시오.

TIP 이번 연도에 귀하와 배우자 둘다 모두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받았다면, 이 지급금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은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금액만을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려면 -0-를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는 경우, 귀하가 받은 모든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모두 비과세 전투 수당을 받은 경우,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한 명이 선택하면 다른 한 명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양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공제를 산정합니다. 선택이 귀하의 EIC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귀하의 총 소득, 납세자 구분 및 적격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투 수당이 없을 때의 근로 소득이 자녀 수 아래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근로 소득이 이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근로 소득에 전투 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혜택이 없습니다.

- 유효한 SSN을 가진 자녀가 없는 경우 \$7,840.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11,750.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6,150.



비과세 전투 수당을 사용해 EIC를 산정하도록 선택한 다면, 이 금액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1i에 입력하십시오.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에 있는 라인 27에 대한 지침을 따르면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 줄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IRS에 EIC 산정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되려면, 이 장의 규칙 15 와 1장의 규칙 및 2장 또는 3장의 규칙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1996년 이후 어느 한 연도에 라도 세액 공제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경우, 5장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는 방법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양식 1040의 설명서에 있는 EIC 작업표를 사용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스케줄 EIC (이 장 후반의 논의되는)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IRS는 귀하의 EIC를 산정하기를 원한다면, 이전의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를 참고하십시오.

특별 설명-EIC 작업표

EIC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EIC 작업표 A 또는 EIC 작업표 B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이러한 작업표를 사용하는 방법과 신고서에서 EIC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IC 작업표 A. 2023년에 자영업업을 한 적이 없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이 아닌 경우 EIC 작업표 A를 사용하십시오.

EIC 작업표 B. 2023년에 어느 시점이라도 자영업자였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락을 읽고 EIC 작업표 B를 작성하십시오.

자영업의 순이익이 \$400 이상인 경우. 자영업 순이익이 \$400 이상인 경우 스케줄 SE (양식 1040)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적절한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자격이 있는 EIC의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순이익을 산정할 때는 허용된 사업 경비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순이익을 산정할때 선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 스케줄 SE의 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순이익을 산정하면 EIC 자격을 얻거나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 \$6,560 미만인 경우,

선택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SE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부부 두 사람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EIC 작업표 B의 파트 1과 파트 2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2. 귀하와 배우자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습니다.
3. 귀하 또는 배우자는 스케줄 SE를 제출하고 둘 중 한 명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정 직원. 법정 직원은 스케줄 C에 임금과 경비를 신고합니다. 법정 직원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작성할 때 스케줄 C의 파트 3에 있는 라인 1에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EIC

적격 자녀가 있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스케줄 EIC는 적격 자녀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이름, 연령, SSN, 귀하와의 관계 및 자녀가 귀하와 한 해 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이 포함됩니다.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지만 첨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 처리 및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5.

EIC 불허



1996년 이후 그 어느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불허)되거나 감소된 경우, 2023년에 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1996년 이후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되거나 감소된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상황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2023년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양식 8862, '불허 후 특정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정보'를 작성하고 2023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양식 8862를 첨부해야 할 상황의 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62 및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한 후 여러 해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규칙도 설명합니다.

양식 8862

1996년 이후의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된 경우, EIC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양식 8862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 간행물에 설명된 모든 규칙을 충족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 1. 아래의 (1) 또는 (2)가 사실인 경우 양식 8862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1. 이전 연도에 EIC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후,
 - a. 귀하는 이후 연도에 양식 8862를 제출했고 이후 연도의 EIC가 허용된 경우, 그리고
 - b.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또 다시 EIC가 감소 또는 불허된 적이 없었던 경우.
2. 2023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며, EIC가 이전에 감소되거나 불허된 유일한 이유는 스케줄 EIC에 나열된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니라고 IRS가 판단했기 때문인 경우.

이 모든 경우에, EIC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식 8862를 제출하지 않아도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2. 양식 8862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EIC를

- 귀하의 EIC 청구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했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또는
- 귀하의 EIC 청구가 사기 때문이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10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이 장에서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를 보십시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3년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양식 8862를 2023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이 다음 연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제는 양식 8862가 2023년 또는 2024년 중 언제 요구되는지 설명합니다.

예시 1 -양식 8862가 2023년에 요구되는 경우. 귀하는 2023년 3월에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EIC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3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2023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2-양식 8862가 2024년에 요구되는 경우. 이 사례는 2024년 2월에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전 사례와 동일합니다. 2023년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을 때 법정 추정세 고지서에 언급된 90일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24년 신고서를 제출 시 적격 자녀를 포함하여 EIC를 청구하려면 그해에 양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2024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에 대한 예외. EIC가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거부 또는 감소된 경우, 양식 8862를 다음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계산이 부정확하면 IRS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SSN을 제공하지 않으면 IRS는 EIC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양식 8862의 누락. 2023년 세금 신고서에 양식 8862의 첨부가 요구되지만 작성된 양식 8862를 첨부하지 않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이 청구는 자동으로 거부될 것입니다. 이는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간주됩니다. 작성된 양식 8862 없이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정확하게 작성된 양식 8862를 첨부하더라도 청구한 EIC와 관련된 환급이 처리되기 전에 IRS에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1996년 이후에 EIC가 거부되고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2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3년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EIC 청구 금지 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시는 귀하의 EIC 청구 금지 연도를 보여줍니다.

예시 3-EIC 청구가 2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3년 3월에 제출한 2022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3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도 2023년 또는 2024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4. 2022년에 대한 EIC가 2023년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거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 3과 동일합니다. 과세 연도 2024년 또는 2025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5-EIC 청구가 10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3년 2월에 제출한 2022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사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탄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3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도 2023년에서 2032년까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33

년 신고서에 EIC 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6.

상세한 예시

다음 페이지에는 EIC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1—S 로즈

S 재이미는 만 63세로 은퇴자입니다. S는 한 해 동안 \$7,000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았고, 파트타임로 \$17,000를 받았습니다. 또한, \$7,400의 과세 대상 연금을 받았습니다. S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S의 AGI는 양식 1040, 라인 11의 \$24,400 (\$17,000 + \$7,400)입니다.

S는 결혼하지 않았고 1년 내내 미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S는 다른 사람의 신고서 청구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으며 투자 소득이 없고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S는 양식 1040의 설명서에서 자격 요건을 위한 단계를 읽습니다. S는 1단계에서 자신의 AGI (\$24,400)가 \$24,210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는 나머지 양식 1040을 작성하여 IRS에 제출합니다.

예시 2—C와 J 그레이

C와 J 그레이는 만 10세와 만 8세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C와 J는 아이들과 2023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C는 \$15,000, J는 \$18,030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레이 부부는 저축 계좌에서 \$52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에 그 외의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C와 J는 2023년 양식 1040 및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EIC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설명서에 있는 라인 27에 대한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 C와 J가 양식 1040, 라인 11에 입력한 금액은 \$33,555였습니다. 둘 다 유효한 SSN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했으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C와 J는 둘 다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1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2단계로 진행하도록 허용합니다.

2단계. 그레이 부부의 유일한 투자 소득은 \$525의 이자 소득입니다. 해당 금액은 \$11,0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단계의 두 번째 질문에 “No”라고 답변한 후 3단계로 이동합니다.

3단계. 그들의 자녀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여 C와 J의 적격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C와 J는 3단계의 첫 번째 질문에 “Yes”라고 답변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 직후 발급받은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C와 J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3단계의 두 번째 질문에 “Yes”라고 답

변합니다. 즉, 질문 3과 4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며 5단계로 이동합니다.

5단계. C와 J는 자신들이 번 금액을 합산 임금인 \$33,030라고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이 \$59,478보다 적기 때문에 6단계로 이동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합니다.

6단계. C와 J는 EIC를 직접 산정하고 싶어 하므로 양식 1040 지침에서 EIC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EIC 작업표 작성하기. C와 J는 다음과 같이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1. C와 J는 총 근로 소득 (\$33,030)을 라인 1에 입력합니다.
2. 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EIC 표로 이동합니다. C와 J는 \$33,000에서 \$33,050 사이의 범위에서 그들의 소득인 \$33,030를 찾습니다. 두 자녀 모두 유효한 SSN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따라 *부부 공동 신고 아래의 아동 2명용 열로 이동하여* \$5,571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라인 2에 \$5,571를 입력합니다.
3. 그들의 AGI (\$33,555)를 라인 3에 입력하고 라인 1의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4. EIC 표에서 \$33,555를 찾고 라인 5에 \$5,455를 입력합니다.
5. 그들은 라인 6에 \$5,455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라인 2의 금액 (\$5,571)과 라인 5의 금액 (\$5,455) 중 더 작은 값입니다.
6. 그레이는 양식 1040의 라인 27에 \$5,455를 입력합니다. 이제 스케줄 EIC (나중에 설명)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그들은 기록을 위해 EIC 작업표를 보관합니다.

세금 관련 도움을 얻는 방법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료 간행물, 양식 또는 설명서를 다운로드하려면 [IRS.gov](https://www.irs.gov)를 방문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십시오.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임금 및 소득 명세서 (양식 W-2, W-2G, 1099-R, 1099-MISC, 1099-NEC 등), 실업 수당 명세서 (우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또는 기타 정부 지급 명세서 (양식 1099-G), 은행 및 투자 회사로부터 이자, 배당금 및 퇴직 명세서 (양식 1099)를 받은 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직접 준비하거나 무료 신고서 작성대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 무료 옵션. 온라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음을 포함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신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또는 무료 신고서 기입 가능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제출을 통한 주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gov/FreeFile](https://www.irs.gov/FreeFile)을 방문하여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신고서 작성, 전자 제출 및 직접 임금 또는 납부 옵션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IC를 청구하려면, 아래의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네	아니요
1. 귀하의 AGI가 다음 금액보다 적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7,64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6,5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3,120) 또는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2,91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478), 또는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6,83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3,398) (규칙 1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 신고 한다면 2023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전에 발급된 유효한 SSN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까? (규칙 2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귀하의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거하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칙을 충족합니까? (규칙 3 참조.) 2023년에 기혼이 아니었다면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주의사항: 귀하가 비거주자인 경우 “네” 라고 대답해야하는 상황은,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에 한합니다. (규칙 4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양식 2555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5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귀하의 투자 소득이 \$11,000 이하입니까? (규칙 6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귀하의 총 근로 소득은 \$1 이상이지만 다음보다 적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7,64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4,210),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6,56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3,120) 또는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2,91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9,478), 또는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6,83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3,398) (규칙 7 그리고 15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귀하가 (a)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니거나 (b)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10 그리고 13 참조.) 정지: 귀하가 EIC에 대한 청구를 원하는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8번과 9번 질문에 답하고 10~12번을 건너뛴다. 적격 자녀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규칙 9 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을 경우, 8번과 9번 질문을 건너뛰고 10~12번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에 대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합니까? (규칙 8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귀하만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a)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거나, (b)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규칙 9 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2023년 말 만 25세이상 만65세 미만이었습니까? (규칙 11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a)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거나 (b)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답변을 “네” 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12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귀하는 미국에 있는 귀하의 주 거주지 (및 배우자의 주 거주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습니까? (규칙 14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귀하에게 적용되는 어느 한 질문에라도 “아니요” 라고 답했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VITA.**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 (VITA) 프로그램은 중하위 소득층, 장애인 및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로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IRS.gov/VITA](https://www.irs.gov/VITA)를 방문하여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800-906-9887로 전화하여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TCE.** 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 (TCE) 프로그램은 특별히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TCE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 특유의 연금 및 은퇴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IRS.gov/TCE](https://www.irs.gov/TCE)를 방문 또는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여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MilTax.** 미군과 적격 재향군인은 Military OneSource를 통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서비스인 밀텍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ilitaryOneSource\(영어\)](https://www.militaryonesource.com/) ([MilitaryOneSource.mil/](https://www.militaryonesource.com/) [MilTax\(영어\)](https://www.militaryonesource.com/miltax))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IRS는 무료 기입 가능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 사용하기. [IRS.gov/Tools](https://www.irs.gov/tools)에서 아래에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

- **근로 소득 세액공제 지원** ([IRS.gov/EITCAssistant](https://www.irs.gov/EITCAssistant))에 따라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온라인 EIN 신청** ([IRS.gov/EIN](https://www.irs.gov/EIN))은 고용주 식별 번호 (EIN)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 ([IRS.gov/W4App\(영어\)](https://www.irs.gov/W4App(영어)))는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추정하기 손쉽게 합니다. 이것을 세금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

수가 귀하의 환급, 세후 급여 또는 세금 잔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 계정 조회\(영어\)](#) ([IRS.gov/HomeBuyer\(영어\)](#)) 도구는 상환 및 계정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판매세 공제 계산기\(영어\)](#) ([IRS.gov/SalesTax\(영어\)](#))는 스케줄 A (양식 1040)에 공제를 줄화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IRS.gov에서 현재 시사 및 세법 변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www.irs.gov/Help](#): 가장 흔한 세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IRS.gov/ITA\(영어\)](#): 대화형 세금 도우미는 귀하가 입력한 여러 세금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 [IRS.gov/Forms\(영어\)](#):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세금 변경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에서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등록된 세무사, 공인 회계사 (CPA), 회계사 및 자격증 무보유자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 신고서 작성대행인들이 존재합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 대행은 의뢰하기로 선택했다면 대행업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유료 세금 신고서 작성 대행인이라:

- 신고서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 필수적으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고,
- 작성대행인 세금 식별 번호 (PTIN)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비록 세무대리인이 항상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만 대리인이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모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과 신고서에 신고된 모든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유료로 세금 신고서 작성 대리를 하는 사람은 세무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세무 대리인 선택 요령](#)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주들은 사업체 서비스 온라인 사용을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 (SSA)은 [SSA.gov/employer\(영어\)](#)에서 CPA, 회계사, 등록 대리인 및 양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및 양식 W-2c, '수정된 임금 및 세금 내역서'를 처리하는 개인이 신속, 무료이며 안전한 온라인 W-2 제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RS 소셜 미디어. [IRS.gov/SocialMedia\(영어\)](#)를 방문하여 IRS가 세금 변경, 사기 경보,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최고 우선 순위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공공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SSN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다음 IRS YouTube 채널은 영어, 스페인어, ASL로 다양한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한 짧고 유익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Youtube.com/irsvideos\(영어\)](#).
- [Youtube.com/irsvideomultilingua\(한국어 클릭\)](#).
- [Youtube.com/irsvideosASL\(영어\)](#).

IRS 동영상 시청. IRS 동영상 포털 ([IRSVideos.gov\(영어\)](#))에는 개인, 소규모 사업체, 세무 전문가를 위한 동영상 및 음성 프레젠테이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온라인 세금 정보 받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IRS.gov/MyLanguage](#)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 통역 (OPI) 서비스. IRS는 OP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 (LEP)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OPI 서비스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납세자 지원센터 (TAC), 대부분의 IRS 사무실 및 모든 VITA/TCE 신고서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OPI 서비스는 350 가지 이상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사용 가능.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833-690-059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대체 미디어 형식 (예시, 점자, 대형 활자, 오디오 등등)의 현재 및 미래 보조 품목과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귀하의 IRS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세법, 환급 또는 계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십시오

참고. 양식 9000, '대체 미디어 선호' 또는 양식 9000(SP)은 특정 종류의 서신을 아래와 같은 형식의 서식으로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표준 활자.
- 큰 활자.
- 점자.
- 오디오 (MP3).
- 일반 텍스트 파일 (TXT).
- 점자 준비 파일 (BRF).

재난. [IRS.gov/DisasterRelief\(영어\)](#)에서 사용가능한 재난 세금 경감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세금 양식 및 간행물 얻기. [IRS.gov/Forms\(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IRS.gov/OrderForms](#)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간행물 및 설명서 전자책 (eBook) 형식으로 얻기. [IRS.gov/eBooks\(영어\)](#)에서 대부분의 세금 간행물 및 설명서 (양식 1040 의 설명서도 포함)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eBook으로 다운로드 및 볼 수 있습니다.

IRS eBook은 애플사의 아이패드의 iBook을 이용해 테스트 되었습니다. 당국의 eBook은 다른 eBook 읽기 도구로는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eBook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개인 납세자 전용)에 접속하기. [IRS.gov/Account](#)에서 연방 세금 계정에 대한 정보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분류된 미납 세액 잔액을 보십시오.

- 납부 계획의 세부사항 보기 또는 새로운 납부 계획을 신청 하십시오.
- 세금 납부, 지난 5년간의 납부 내역 및 계류 또는 예정된 납부금을 보십시오.
-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주요 데이터, 및 증명서 등을 포함한 귀하의 세금 기록에 접속하십시오.
- 선택된 몇가지 IRS 통지서의 디지털 사본을 보십시오.
- 세무 전문가가 보낸 정보 승인 요청을 승락 또는 거절을 하십시오.
- 주소 또는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증명서 얻기. 온라인 계정으로 세금 신고 시준 동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금 증명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 검토 및 조정총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IRS.gov/Account](https://www.irs.gov/Account)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계정. 이 도구는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개인 납세자 IRS 온라인 계정에 접속 허가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RS.gov/TaxProAccount](https://www.irs.gov/TaxProAccount)(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직접 입금 사용.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전자 신고를 하고 직접 입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전자 방식으로 귀하의 환급 금액을 금융 계좌에 직접 전달받는 것입니다. 직접 입금을 통해 수표의 실종, 도난, 소멸 및 IRS의 우송 불가로 인해 환송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10 명 중 8 명이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입금을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면 [IRS.gov/DirectDeposit](https://www.irs.gov/DirectDeposit)를 방문해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십시오.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문제 신고 및 해결.

-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개인 정보를 훔쳐 세금 관련 사기를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SSN이 사용된 경우 귀하의 세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인증 또는 요청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간략한 링크도 포함), 전화 또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식별 번호 (PIN), 비밀 번호 또는 크레딧 카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계정 관련 유사 정보도 포함됩니다.
- [IRS.gov/IdentityTheft](https://www.irs.gov/IdentityTheft)에서 납세자, 세무사와 기업을 위한 신원 도용 및 데이터 보안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SSN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귀하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신분 보호 PIN (IP PIN)을 받으십시오. IP PIN 이란 사기성 세금 신고서에 SSN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배정된 여섯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IP PIN을 소지하고 있으면, 타인이 귀하의 SSN 을 도용해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RS.gov/IPPIN](https://www.irs.gov/IPPIN)을 방문하십시오.

환급 상태 확인하는 방법.

- [IRS.gov/Refunds](https://www.irs.gov/Refunds)를 방문하십시오.

- 모바일 기기에 IRS2Go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환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환급 관련 자동 직통 전화 800 -829-1954로 전화하십시오.



IRS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를 청구하는 신고서의 경우,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환급에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하기. IRS에 내는 미국 세금 납부금은 미국 달러로 내야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받지 않습니다. [IRS.gov/Payments](https://www.irs.gov/Payments)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십시오.

- **IRS 직접 납부.** 일반 계좌 또는 저축 계좌에 무료로 개별 세금 고지서 또는 추정세를 직접 납부하십시오.
-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디지털 지갑.** 승인된 납부 처리자를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전자 자금 인출.** 세금 신고서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를 스케줄하십시오.
-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표 또는 우편환.** 고지서 또는 설명서에 열거된 주소로 납부금액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 **현금.** 참여 소매점에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송금.** 금융 기관에서 당일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 여부, 비용 및 마감 시간을 문의하십시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gov/Payments](https://www.irs.gov/Payments)에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현재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납부 합의 (IRS.gov/OPA)**을 신청하여 월 할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온라인 절차를 완료하면 합의 승인 여부를 즉시 통보받게 됩니다.
- **세액 조정 제안 사전 자격 확인(영어)**을 사용하여 총 체납 세액 보다 적은 액수로 세금 부채 종결에 합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십시오. 세액 조정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OIC](https://www.irs.gov/OIC)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정된 신고서 제출. [IRS.gov/Form1040X](https://www.irs.gov/Form1040X)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사항 또는 정보를 찾으십시오.

수정 신고서 현황 확인. [IRS.gov/WMAR](https://www.irs.gov/WMAR)을 방문하여 양식 1040 -X 수정된 신고서의 현황을 추적하십시오.



당국의 시스템에 귀하가 제출한 수정된 신고서가 보여지려면 이를 제출후 최대 3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최대 16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송받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 [IRS.gov/Notices](https://www.irs.gov/Notices)를 방문하여 IRS 통지서 또는 서신의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 또는 서신에 대한 응답하기. 이제 문서 업로드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공지 및 서신에 대한 응답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통지서의 경우, 추가 조치를 위해 IRS.gov로 적절하게 안내됩니다. 이 도구에 대해 알아보려면 [IRS.gov/Upload\(영어\)](#)로 이동하십시오.

비고. 스케줄 LEP (양식 1040), '언어 선호도 변경 요청'을 사용하여 IRS의 통지서,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연락을 가능한 경우 대체 언어로 받기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한 언어로 즉시 서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EP 납세자에 대한 IRS의 헌신은 2023년에 번역 제공 시작이 예정된 다년의 타임라인의 일환입니다. 고지서 및 서신을 비롯한 서면 연락들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영문으로된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현지 TAC 연락. TAC를 방문하지 않고도 IRS.gov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IRS.gov/LetUsHelp](#)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주제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세금 문제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TAC에서 세금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TAC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IRS.gov/TACLocator\(영어\)](#)에서 가장 가까운 TAC를 찾고 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예약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IRS2Go 앱의 연결 유지 탭에서 문의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Local Offices' (현지 사무소)를 클릭하십시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가 도와드립니다

TAS란 무엇입니까?

TAS는 IRS 내 독립 기관으로서 납세자를 돕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TAS는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납세자 권리 헌장\(영어\)](#)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납세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

납세자 권리헌장은 모든 납세자가 IRS를 상대할 때 가지는 10가지 권리를 기술합니다. [TaxpayerAdvocate.IRS.gov\(영어\)](#)에 방문하면 [이러한 권리의 의미](#)와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알고,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TAS의 역할

TAS는 IRS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지원자 한 명이 배정되어 지원 과정에서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TAS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문제가 귀하, 귀하의 가족 또는 귀하의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이 즉각적인 불리한 조치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우, 또는
- IRS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한 날짜까지 IRS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TAS 연락 방법

TAS의 사무소는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호관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려면:

- [TaxpayerAdvocate.IRS.gov/Contact-Us\(영어\)](#)로 이동하십시오;
- [IRS.gov/pub/irs-pdf/p1546.pdf](#)에 있는 간행물 1546, '납세자 보호 서비스는 IRS 귀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간행물 1546를 주문하려면 IRS에 수신자 부담 번호인 800-TAX-FORM (800-829-3676)로 전화하십시오;
- 현지 주소록; 또는
- TAS 수신자 부담 번호인 877-777-4778으로 전화하십시오.

TAS가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

TAS는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 중 하나를 알고 있는 경우 [IRS.gov/SAMS](#)에서 신고해 주십시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LITC)

LITC는 IRS와 TAS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LITC는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며 IRS와 세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대변합니다. LITC는 감사, 항소, 세금 징수 등과 같은 IRS와의 분쟁 그리고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구사하는 개인을 위해 납세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가까운 LITC를 찾으려면 [TaxpayerAdvocate.IRS.gov/LITC\(영어\)](#)에 있는 LITC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gov/pub/irs-pdf/p4134.pdf\(영어\)](#)에서 IRS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영어\)](#)을 참조하십시오.

2023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표 주의사항. 이것은 세율표가 아닙니다.

1. 세액공제를 찾으려면 "이상 - 미만" 열을 보고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포함된 행을 찾습니다.
2. 그런 다음, 납세자 구분 및 이전에 정의된 SSN을 가지고 있는 자녀 수를 포함하는 열로 이동합니다. EIC 작업표에 있는 해당 열의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예. 납세자 구분이 미혼이고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으며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2,455인 경우 \$842를 입력합니다.

워크시트에서 조회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리고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사별 배우자 배우자이고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공제—			
2,400	2,450	186	825	970	1,091
2,450	2,500	189	842	990	1,114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1	50	2	9	10	11	2	9	10	11
50	100	6	26	30	34	6	26	30	34
100	150	10	43	50	56	10	43	50	56
150	200	13	60	70	79	13	60	70	79
200	250	17	77	90	101	17	77	90	101
250	300	21	94	110	124	21	94	110	124
300	350	25	111	130	146	25	111	130	146
350	400	29	128	150	169	29	128	150	169
400	450	33	145	170	191	33	145	170	191
450	500	36	162	190	214	36	162	190	214
500	550	40	179	210	236	40	179	210	236
550	600	44	196	230	259	44	196	230	259
600	650	48	213	250	281	48	213	250	281
650	700	52	230	270	304	52	230	270	304
700	750	55	247	290	326	55	247	290	326
750	800	59	264	310	349	59	264	310	349
800	850	63	281	330	371	63	281	330	371
850	900	67	298	350	394	67	298	350	394
900	950	71	315	370	416	71	315	370	416
950	1,000	75	332	390	439	75	332	390	439
1,000	1,050	78	349	410	461	78	349	410	461
1,050	1,100	82	366	430	484	82	366	430	484
1,100	1,150	86	383	450	506	86	383	450	506
1,150	1,200	90	400	470	529	90	400	470	529
1,200	1,250	94	417	490	551	94	417	490	551
1,250	1,300	98	434	510	574	98	434	510	574
1,300	1,350	101	451	530	596	101	451	530	596
1,350	1,400	105	468	550	619	105	468	550	619
1,400	1,450	109	485	570	641	109	485	570	641
1,450	1,500	113	502	590	664	113	502	590	664
1,500	1,550	117	519	610	686	117	519	610	686
1,550	1,600	120	536	630	709	120	536	630	709
1,600	1,650	124	553	650	731	124	553	650	731
1,650	1,700	128	570	670	754	128	570	670	754
1,700	1,750	132	587	690	776	132	587	690	776
1,750	1,800	136	604	710	799	136	604	710	799
1,800	1,850	140	621	730	821	140	621	730	821
1,850	1,900	143	638	750	844	143	638	750	844
1,900	1,950	147	655	770	866	147	655	770	866
1,950	2,000	151	672	790	889	151	672	790	889
2,000	2,050	155	689	810	911	155	689	810	911
2,050	2,100	159	706	830	934	159	706	830	934
2,100	2,150	163	723	850	956	163	723	850	956
2,150	2,200	166	740	870	979	166	740	870	979
2,200	2,250	170	757	890	1,001	170	757	890	1,001
2,250	2,300	174	774	910	1,024	174	774	910	1,024
2,300	2,350	178	791	930	1,046	178	791	930	1,046
2,350	2,400	182	808	950	1,069	182	808	950	1,069
2,400	2,450	186	825	970	1,091	186	825	970	1,091
2,450	2,500	189	842	990	1,114	189	842	990	1,114
2,500	2,550	193	859	1,010	1,136	193	859	1,010	1,136
2,550	2,600	197	876	1,030	1,159	197	876	1,030	1,159
2,600	2,650	201	893	1,050	1,181	201	893	1,050	1,181
2,650	2,700	205	910	1,070	1,204	205	910	1,070	1,204
2,700	2,750	208	927	1,090	1,226	208	927	1,090	1,226
2,750	2,800	212	944	1,110	1,249	212	944	1,110	1,249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2,800	2,850	216	961	1,130	1,271	216	961	1,130	1,271
2,850	2,900	220	978	1,150	1,294	220	978	1,150	1,294
2,900	2,950	224	995	1,170	1,316	224	995	1,170	1,316
2,950	3,000	228	1,012	1,190	1,339	228	1,012	1,190	1,339
3,000	3,050	231	1,029	1,210	1,361	231	1,029	1,210	1,361
3,050	3,100	235	1,046	1,230	1,384	235	1,046	1,230	1,384
3,100	3,150	239	1,063	1,250	1,406	239	1,063	1,250	1,406
3,150	3,200	243	1,080	1,270	1,429	243	1,080	1,270	1,429
3,200	3,250	247	1,097	1,290	1,451	247	1,097	1,290	1,451
3,250	3,300	251	1,114	1,310	1,474	251	1,114	1,310	1,474
3,300	3,350	254	1,131	1,330	1,496	254	1,131	1,330	1,496
3,350	3,400	258	1,148	1,350	1,519	258	1,148	1,350	1,519
3,400	3,450	262	1,165	1,370	1,541	262	1,165	1,370	1,541
3,450	3,500	266	1,182	1,390	1,564	266	1,182	1,390	1,564
3,500	3,550	270	1,199	1,410	1,586	270	1,199	1,410	1,586
3,550	3,600	273	1,216	1,430	1,609	273	1,216	1,430	1,609
3,600	3,650	277	1,233	1,450	1,631	277	1,233	1,450	1,631
3,650	3,700	281	1,250	1,470	1,654	281	1,250	1,470	1,654
3,700	3,750	285	1,267	1,490	1,676	285	1,267	1,490	1,676
3,750	3,800	289	1,284	1,510	1,699	289	1,284	1,510	1,699
3,800	3,850	293	1,301	1,530	1,721	293	1,301	1,530	1,721
3,850	3,900	296	1,318	1,550	1,744	296	1,318	1,550	1,744
3,900	3,950	300	1,335	1,570	1,766	300	1,335	1,570	1,766
3,950	4,000	304	1,352	1,590	1,789	304	1,352	1,590	1,789
4,000	4,050	308	1,369	1,610	1,811	308	1,369	1,610	1,811
4,050	4,100	312	1,386	1,630	1,834	312	1,386	1,630	1,834
4,100	4,150	316	1,403	1,650	1,856	316	1,403	1,650	1,856
4,150	4,200	319	1,420	1,670	1,879	319	1,420	1,670	1,879
4,200	4,250	323	1,437	1,690	1,901	323	1,437	1,690	1,901
4,250	4,300	327	1,454	1,710	1,924	327	1,454	1,710	1,924
4,300	4,350	331	1,471	1,730	1,946	331	1,471	1,730	1,946
4,350	4,400	335	1,488	1,750	1,969	335	1,488	1,750	1,969
4,400	4,450	339	1,505	1,770	1,991	339	1,505	1,770	1,991
4,450	4,500	342	1,522	1,790	2,014	342	1,522	1,790	2,014
4,500	4,550	346	1,539	1,810	2,036	346	1,539	1,810	2,036
4,550	4,600	350	1,556	1,830	2,059	350	1,556	1,830	2,059
4,600	4,650	354	1,573	1,850	2,081	354	1,573	1,850	2,081
4,650	4,700	358	1,590	1,870	2,104	358	1,590	1,870	2,104
4,700	4,750	361	1,607	1,890	2,126	361	1,607	1,890	2,126
4,750	4,800	365	1,624	1,910	2,149	365	1,624	1,910	2,149
4,800	4,850	369	1,641	1,930	2,171	369	1,641	1,930	2,171
4,850	4,900	373	1,658	1,950	2,194	373	1,658	1,950	2,194
4,900	4,950	377	1,675	1,970	2,216	377	1,675	1,970	2,216
4,950	5,000	381	1,692	1,990	2,239	381	1,692	1,990	2,239
5,000	5,050	384	1,709	2,010	2,261	384	1,709	2,010	2,261
5,050	5,100	388	1,726	2,030	2,284	388	1,726	2,030	2,284
5,100	5,150	392	1,743	2,050	2,306	392	1,743	2,050	2,306
5,150	5,200	396	1,760	2,070	2,329	396	1,760	2,070	2,329
5,200	5,250	400	1,777	2,090	2,351	400	1,777	2,090	2,351
5,250	5,300	404	1,794	2,110	2,374	404	1,794	2,110	2,374
5,300	5,350	407	1,811	2,130	2,396	407	1,811	2,130	2,396
5,350	5,400	411	1,828	2,150	2,419	411	1,828	2,150	2,419
5,400	5,450	415	1,845	2,170	2,441	415	1,845	2,170	2,441
5,450	5,500	419	1,862	2,190	2,464	419	1,862	2,190	2,464
5,500	5,550	423	1,879	2,210	2,486	423	1,879	2,210	2,486
5,550	5,600	426	1,896	2,230	2,509	426	1,896	2,230	2,509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 열을 사용하십시오.

(계속됨)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				귀하의 세액공제-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				귀하의 세액공제-																																	
5,600	5,650	430	1,913	2,250	2,531	430	1,913	2,250	2,531	8,800	8,850	600	3,001	3,530	3,971	600	3,001	3,530	3,971	8,850	8,900	600	3,018	3,550	3,994	600	3,018	3,550	3,994	8,900	8,950	600	3,035	3,570	4,016	600	3,035	3,570	4,016	8,950	9,000	600	3,052	3,590	4,039	600	3,052	3,590	4,039
5,700	5,750	434	1,930	2,270	2,554	434	1,930	2,270	2,554	9,000	9,050	600	3,069	3,610	4,061	600	3,069	3,610	4,061	9,050	9,100	600	3,086	3,630	4,084	600	3,086	3,630	4,084	9,100	9,150	600	3,103	3,650	4,106	600	3,103	3,650	4,106	9,150	9,200	600	3,120	3,670	4,129	600	3,120	3,670	4,129
5,750	5,800	438	1,947	2,290	2,576	438	1,947	2,290	2,576	9,200	9,250	600	3,137	3,690	4,151	600	3,137	3,690	4,151	9,250	9,300	600	3,154	3,710	4,174	600	3,154	3,710	4,174	9,300	9,350	600	3,171	3,730	4,196	600	3,171	3,730	4,196	9,350	9,400	600	3,188	3,750	4,219	600	3,188	3,750	4,219
5,800	5,850	442	1,964	2,310	2,599	442	1,964	2,310	2,599	9,400	9,450	600	3,205	3,770	4,241	600	3,205	3,770	4,241	9,450	9,500	600	3,222	3,790	4,264	600	3,222	3,790	4,264	9,500	9,550	600	3,239	3,810	4,286	600	3,239	3,810	4,286	9,550	9,600	600	3,256	3,830	4,309	600	3,256	3,830	4,309
5,850	5,900	446	1,981	2,330	2,621	446	1,981	2,330	2,621	9,600	9,650	600	3,273	3,850	4,331	600	3,273	3,850	4,331	9,650	9,700	600	3,290	3,870	4,354	600	3,290	3,870	4,354	9,700	9,750	600	3,307	3,890	4,376	600	3,307	3,890	4,376	9,750	9,800	600	3,324	3,910	4,399	600	3,324	3,910	4,399
5,900	5,950	449	1,998	2,350	2,644	449	1,998	2,350	2,644	9,800	9,850	598	3,341	3,930	4,421	600	3,341	3,930	4,421	9,850	9,900	594	3,358	3,950	4,444	600	3,358	3,950	4,444	9,900	9,950	590	3,375	3,970	4,466	600	3,375	3,970	4,466	9,950	10,000	586	3,392	3,990	4,489	600	3,392	3,990	4,489
5,950	6,000	453	2,015	2,370	2,666	453	2,015	2,370	2,666	10,000	10,050	583	3,409	4,010	4,511	600	3,409	4,010	4,511	10,050	10,100	579	3,426	4,030	4,534	600	3,426	4,030	4,534	10,100	10,150	575	3,443	4,050	4,556	600	3,443	4,050	4,556	10,150	10,200	571	3,460	4,070	4,579	600	3,460	4,070	4,579
6,000	6,050	457	2,032	2,390	2,689	457	2,032	2,390	2,689	10,200	10,250	567	3,477	4,090	4,601	600	3,477	4,090	4,601	10,250	10,300	563	3,494	4,110	4,624	600	3,494	4,110	4,624	10,300	10,350	560	3,511	4,130	4,646	600	3,511	4,130	4,646	10,350	10,400	556	3,528	4,150	4,669	600	3,528	4,150	4,669
6,050	6,100	461	2,049	2,410	2,711	461	2,049	2,410	2,711	10,400	10,450	552	3,545	4,170	4,691	600	3,545	4,170	4,691	10,450	10,500	548	3,562	4,190	4,714	600	3,562	4,190	4,714	10,500	10,550	544	3,579	4,210	4,736	600	3,579	4,210	4,736	10,550	10,600	540	3,596	4,230	4,759	600	3,596	4,230	4,759
6,100	6,150	465	2,066	2,430	2,734	465	2,066	2,430	2,734	10,600	10,650	537	3,613	4,250	4,781	600	3,613	4,250	4,781	10,650	10,700	533	3,630	4,270	4,804	600	3,630	4,270	4,804	10,700	10,750	529	3,647	4,290	4,826	600	3,647	4,290	4,826	10,750	10,800	525	3,664	4,310	4,849	600	3,664	4,310	4,849
6,150	6,200	469	2,083	2,450	2,756	469	2,083	2,450	2,756	10,800	10,850	521	3,681	4,330	4,871	600	3,681	4,330	4,871	10,850	10,900	518	3,698	4,350	4,894	600	3,698	4,350	4,894	10,900	10,950	514	3,715	4,370	4,916	600	3,715	4,370	4,916	10,950	11,000	510	3,732	4,390	4,939	600	3,732	4,390	4,939
6,200	6,250	472	2,100	2,470	2,779	472	2,100	2,470	2,779	11,000	11,050	506	3,749	4,410	4,961	600	3,749	4,410	4,961	11,050	11,100	502	3,766	4,430	4,984	600	3,766	4,430	4,984	11,100	11,150	498	3,783	4,450	5,006	600	3,783	4,450	5,006	11,150	11,200	495	3,800	4,470	5,029	600	3,800	4,470	5,029
6,250	6,300	476	2,117	2,490	2,801	476	2,117	2,490	2,801	11,200	11,250	491	3,817	4,490	5,051	600	3,817	4,490	5,051	11,250	11,300	487	3,834	4,510	5,074	600	3,834	4,510	5,074	11,300	11,350	483	3,851	4,530	5,096	600	3,851	4,530	5,096	11,350	11,400	479	3,868	4,550	5,119	600	3,868	4,550	5,119
6,300	6,350	480	2,134	2,510	2,824	480	2,134	2,510	2,824	11,400	11,450	475	3,885	4,570	5,141	600	3,885	4,570	5,141	11,450	11,500	472	3,902	4,590	5,164	600	3,902	4,590	5,164	11,500	11,550	468	3,919	4,610	5,186	600	3,919	4,610	5,186	11,550	11,600	464	3,936	4,630	5,209	600	3,936	4,630	5,209
6,350	6,400	484	2,151	2,530	2,846	484	2,151	2,530	2,846	11,600	11,650	460	3,953	4,650	5,231	600	3,953	4,650	5,231	11,650	11,700	456	3,970	4,670	5,254	600	3,970	4,670	5,254	11,700	11,750	452	3,987	4,690	5,276	600	3,987	4,690	5,276	11,750	11,800	449	3,995	4,710	5,299	600	3,995	4,710	5,299
6,400	6,450	488	2,168	2,550	2,869	488	2,168	2,550	2,869	11,800	11,850	445	3,995	4,730	5,321	600	3,995	4,730	5,321	11,850	11,900	441	3,995	4,750	5,344	600	3,995	4,750	5,344	11,900	11,950	437	3,995	4,770	5,366	600	3,995	4,770	5,366	11,950	12,000	433	3,995	4,790	5,389	600	3,995	4,790	5,389
6,450	6,500	492	2,185	2,570	2,891	492	2,185	2,570	2,891	12,000	12,050	441	3,995	4,730	5,321	600	3,995	4,730	5,321	12,050	12,100	437	3,995	4,730	5,321	600	3,995	4,730	5,321	12,100	12,150	433	3,995	4,730	5,321	600	3,995	4,730	5,321	12,150	12,200	429	3,995	4,730	5,321	600	3,995	4,730	5,321
6,500	6,550	495	2,202	2,590	2,914	495	2,202	2,590	2,914	12,200	12,250	429	4,013	4,750	5,366	600	4,013	4,750	5,366	12,250	12,300	425	4,030	4,770	5,400	600	4,030	4,770	5,400	12,300	12,350	421	4,047	4,790	5,434	600	4,047	4,790	5,434	12,350	12,400	417	4,064	4,810	5,468	600	4,064	4,810	5,468
6,550	6,600	499	2,219	2,610	2,936	499	2,219	2,610	2,936	12,400	12,450	417	4,081	4,790	5,501	600	4,081	4,790	5,501	12,450	12,500	413	4,098	4,810	5,534	600	4,098	4,810	5,534	12,500	12,550	409	4,115	4,830	5,568	600	4,115	4,830	5,568	12,550	12,600	405	4,132	4,850	5,602	600	4,132	4,850	5,602
6,600	6,650	503	2,236	2,630	2,959	503	2,236	2,630	2,959	12,600	12,650	405	4,149	4,830	5,636	600	4,149	4,830	5,636	12,650	12,700	401	4,166	4,850	5,669	600	4,166	4,850	5,669	12,700	12,750	397	4,183	4,870	5,703	600	4,183	4,870	5,703	12,750	12,800	393	4,200	4,890	5,737	600	4,200	4,890	5,737
6,650	6,700	507	2,253	2,650	2,981	507	2,253	2,650	2,981	12,800	12,850	393	4,217	4,870	5,771	600	4,217	4,870	5,771	12,850	12,900	389	4,234	4,890	5,804	600	4,234	4,890	5,804	12,900	12,950	385	4,251	4,910	5,838	600	4,251	4,910	5,838	12,950	13,000	381	4,268	4,930	5,872	600	4,268	4,930	5,872
6,700	6,750	511	2,270	2,670	3,004	511	2,270	2,670	3,004	13,000	13,050	381	4,285	4,910	5,906	600	4,285	4,910	5,906	13,050	13,100	377	4,302	4,930	5,939	600	4,302	4,930	5,939	13,100	13,150	373	4,319	4,950	5,973	600	4,319	4,950	5,973	13,150	13,200	369	4,336	4,970	6,007	600	4,336	4,970	6,007
6,750	6,800	514	2,287	2,690	3,026	514	2,287	2,690	3,026	13,200	13,250	369	4,353	4,950	6,041	600	4,353	4,950	6,041	13,250	13,300	365	4,370	4,970	6,074	600	4,370	4,970	6,074	13,300	13,350	361	4,387	4,990	6,108	600	4,387	4,990	6,108	13,350	13,400	357	4,404	5,010	6,142	600	4,404	5,010	6,142
6,800	6,850	518	2,304	2,710	3,049	518	2,304	2,710	3,049	13,400	13,450	357	4,421	5,010	6,175	600	4,421	5,010	6,175	13,450	13,500	353	4,438	5,030	6,208	600	4,438	5,030	6,208	13,500	13,550	349	4,455	5,050	6,242	600	4,455	5,050	6,242	13,550	13,600	345	4,472	5,070	6,276	600	4,472	5,070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12,000	12,050	430	3,995	4,810	5,411	600	3,995	4,810	5,411	15,200	15,250	185	3,995	6,090	6,851	600	3,995	6,090	6,851	15,250	15,300	181	3,995	6,110	6,874	600	3,995	6,110	6,874
12,050	12,100	426	3,995	4,830	5,434	600	3,995	4,830	5,434	15,300	15,350	177	3,995	6,130	6,896	600	3,995	6,130	6,896	15,350	15,400	173	3,995	6,150	6,919	600	3,995	6,150	6,919
12,100	12,150	422	3,995	4,850	5,456	600	3,995	4,850	5,456																				
12,150	12,200	418	3,995	4,870	5,479	600	3,995	4,870	5,479																				
12,200	12,250	414	3,995	4,890	5,501	600	3,995	4,890	5,501	15,400	15,450	169	3,995	6,170	6,941	600	3,995	6,170	6,941	15,450	15,500	166	3,995	6,190	6,964	600	3,995	6,190	6,964
12,250	12,300	410	3,995	4,910	5,524	600	3,995	4,910	5,524	15,500	15,550	162	3,995	6,210	6,986	600	3,995	6,210	6,986	15,550	15,600	158	3,995	6,230	7,009	600	3,995	6,230	7,009
12,300	12,350	407	3,995	4,930	5,546	600	3,995	4,930	5,546																				
12,350	12,400	403	3,995	4,950	5,569	600	3,995	4,950	5,569																				
12,400	12,450	399	3,995	4,970	5,591	600	3,995	4,970	5,591	15,600	15,650	154	3,995	6,250	7,031	600	3,995	6,250	7,031	15,650	15,700	150	3,995	6,270	7,054	600	3,995	6,270	7,054
12,450	12,500	395	3,995	4,990	5,614	600	3,995	4,990	5,614	15,700	15,750	146	3,995	6,290	7,076	600	3,995	6,290	7,076	15,750	15,800	143	3,995	6,310	7,099	600	3,995	6,310	7,099
12,500	12,550	391	3,995	5,010	5,636	600	3,995	5,010	5,636																				
12,550	12,600	387	3,995	5,030	5,659	600	3,995	5,030	5,659																				
12,600	12,650	384	3,995	5,050	5,681	600	3,995	5,050	5,681	15,800	15,850	139	3,995	6,330	7,121	600	3,995	6,330	7,121	15,850	15,900	135	3,995	6,350	7,144	600	3,995	6,350	7,144
12,650	12,700	380	3,995	5,070	5,704	600	3,995	5,070	5,704	15,900	15,950	131	3,995	6,370	7,166	600	3,995	6,370	7,166	15,950	16,000	127	3,995	6,390	7,189	600	3,995	6,390	7,189
12,700	12,750	376	3,995	5,090	5,726	600	3,995	5,090	5,726																				
12,750	12,800	372	3,995	5,110	5,749	600	3,995	5,110	5,749																				
12,800	12,850	368	3,995	5,130	5,771	600	3,995	5,130	5,771	16,000	16,050	124	3,995	6,410	7,211	600	3,995	6,410	7,211	16,050	16,100	120	3,995	6,430	7,234	600	3,995	6,430	7,234
12,850	12,900	365	3,995	5,150	5,794	600	3,995	5,150	5,794	16,100	16,150	116	3,995	6,450	7,256	600	3,995	6,450	7,256	16,150	16,200	112	3,995	6,470	7,279	600	3,995	6,470	7,279
12,900	12,950	361	3,995	5,170	5,816	600	3,995	5,170	5,816																				
12,950	13,000	357	3,995	5,190	5,839	600	3,995	5,190	5,839																				
13,000	13,050	353	3,995	5,210	5,861	600	3,995	5,210	5,861	16,200	16,250	108	3,995	6,490	7,301	600	3,995	6,490	7,301	16,250	16,300	104	3,995	6,510	7,324	600	3,995	6,510	7,324
13,050	13,100	349	3,995	5,230	5,884	600	3,995	5,230	5,884	16,300	16,350	101	3,995	6,530	7,346	600	3,995	6,530	7,346	16,350	16,400	97	3,995	6,550	7,369	600	3,995	6,550	7,369
13,100	13,150	345	3,995	5,250	5,906	600	3,995	5,250	5,906																				
13,150	13,200	342	3,995	5,270	5,929	600	3,995	5,270	5,929																				
13,200	13,250	338	3,995	5,290	5,951	600	3,995	5,290	5,951	16,400	16,450	93	3,995	6,570	7,391	596	3,995	6,570	7,391	16,450	16,500	89	3,995	6,590	7,414	592	3,995	6,590	7,414
13,250	13,300	334	3,995	5,310	5,974	600	3,995	5,310	5,974	16,500	16,550	85	3,995	6,604	7,430	588	3,995	6,604	7,430	16,550	16,600	81	3,995	6,604	7,430	584	3,995	6,604	7,430
13,300	13,350	330	3,995	5,330	5,996	600	3,995	5,330	5,996																				
13,350	13,400	326	3,995	5,350	6,019	600	3,995	5,350	6,019																				
13,400	13,450	322	3,995	5,370	6,041	600	3,995	5,370	6,041	16,600	16,650	78	3,995	6,604	7,430	580	3,995	6,604	7,430	16,650	16,700	74	3,995	6,604	7,430	576	3,995	6,604	7,430
13,450	13,500	319	3,995	5,390	6,064	600	3,995	5,390	6,064	16,700	16,750	70	3,995	6,604	7,430	573	3,995	6,604	7,430	16,750	16,800	66	3,995	6,604	7,430	569	3,995	6,604	7,430
13,500	13,550	315	3,995	5,410	6,086	600	3,995	5,410	6,086																				
13,550	13,600	311	3,995	5,430	6,109	600	3,995	5,430	6,109																				
13,600	13,650	307	3,995	5,450	6,131	600	3,995	5,450	6,131	16,800	16,850	62	3,995	6,604	7,430	565	3,995	6,604	7,430	16,850	16,900	59	3,995	6,604	7,430	561	3,995	6,604	7,430
13,650	13,700	303	3,995	5,470	6,154	600	3,995	5,470	6,154	16,900	16,950	55	3,995	6,604	7,430	557	3,995	6,604	7,430	16,950	17,000	51	3,995	6,604	7,430	553	3,995	6,604	7,430
13,700	13,750	299	3,995	5,490	6,176	600	3,995	5,490	6,176																				
13,750	13,800	296	3,995	5,510	6,199	600	3,995	5,510	6,199																				
13,800	13,850	292	3,995	5,530	6,221	600	3,995	5,530	6,221	17,000	17,050	47	3,995	6,604	7,430	550	3,995	6,604	7,430	17,050	17,100	43	3,995	6,604	7,430	546	3,995	6,604	7,430
13,850	13,900	288	3,995	5,550	6,244	600	3,995	5,550	6,244	17,100	17,150	39	3,995	6,604	7,430	542	3,995	6,604	7,430	17,150	17,200	36	3,995	6,604	7,430	538	3,995	6,604	7,430
13,900	13,950	284	3,995	5,570	6,266	600	3,995	5,570	6,266																				
13,950	14,000	280	3,995	5,590	6,289	600	3,995	5,590	6,289																				
14,000	14,050	277	3,995	5,610	6,311	600	3,995	5,610	6,311	17,200	17,250	32	3,995	6,604	7,430	534	3,995	6,604	7,430	17,250	17,300	28	3,995	6,604	7,430	531	3,995	6,604	7,430
14,050	14,100	273	3,995	5,630	6,334	600	3,995	5,630	6,334	17,300	17,350	24	3,995	6,604	7,430	527	3,995	6,604	7,430	17,350	17,400	20	3,995	6,604	7,430	523	3,995	6,604	7,430
14,100	14,150	269	3,995	5,650	6,356	600	3,995	5,650	6,356																				
14,150	14,200	265	3,995	5,670	6,379	600	3,995	5,670	6,379																				
14,200	14,250	261	3,995	5,690	6,401	600	3,995	5,690	6,401	17,400	17,450	16	3,995	6,604	7,430	519	3,995	6,604	7,430	17,450	17,500	13	3,995	6,604	7,430	515	3,995	6,604	7,430
14,250	14,300	257	3,995	5,710	6,424	600	3,995	5,710	6,424	17,500	17,550	9	3,995	6,604	7,430	511	3,995	6,604	7,430	17,550	17,600	5	3,995	6,604	7,430	508	3,995	6,604	7,430
14,300	14,350	254	3,995	5,730	6,446	600	3,995	5,730	6,446																				
14,350	14,400	250	3,995	5,750	6,469	600	3,995	5,750	6,469																				
14,400	14,450	246	3,995	5,770	6,491	600	3,995	5,770	6,491	17,600	17,650	*	3,995	6,604	7,430	504	3,995	6,604	7,430	17,650	17,700	0	3,995	6,604	7,430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18,400	18,450	0	3,995	6,604	7,430	443	3,995	6,604	7,430	21,600	21,650	0	3,985	6,590	7,416	198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77	6,580	7,405	194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69	6,569	7,395	190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61	6,559	7,384	186	3,995	6,604	7,430
18,450	18,500	0	3,995	6,604	7,430	439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77	6,580	7,405	194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69	6,569	7,395	190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61	6,559	7,384	186	3,995	6,604	7,430										
18,500	18,550	0	3,995	6,604	7,430	435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77	6,580	7,405	194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69	6,569	7,395	190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61	6,559	7,384	186	3,995	6,604	7,430										
18,550	18,600	0	3,995	6,604	7,430	431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77	6,580	7,405	194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69	6,569	7,395	190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61	6,559	7,384	186	3,995	6,604	7,430										
18,600	18,650	0	3,995	6,604	7,430	427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53	6,548	7,374	182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45	6,538	7,363	179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29	6,517	7,342	171	3,995	6,604	7,430										
18,650	18,700	0	3,995	6,604	7,430	423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45	6,538	7,363	179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37	6,527	7,353	175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29	6,517	7,342	171	3,995	6,604	7,430										
18,700	18,750	0	3,995	6,604	7,430	420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37	6,527	7,353	175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37	6,527	7,353	175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29	6,517	7,342	171	3,995	6,604	7,430										
18,750	18,800	0	3,995	6,604	7,430	416	3,995	6,604	7,430	21,650	21,700	0	3,929	6,517	7,342	171	3,995	6,604	7,430	21,700	21,750	0	3,929	6,517	7,342	171	3,995	6,604	7,430	21,750	21,800	0	3,929	6,517	7,342	171	3,995	6,604	7,430										
18,800	18,850	0	3,995	6,604	7,430	412	3,995	6,604	7,430	22,000	22,050	0	3,921	6,506	7,332	167	3,995	6,604	7,430	22,000	22,050	0	3,913	6,496	7,321	163	3,995	6,604	7,430	22,050	22,100	0	3,905	6,485	7,311	160	3,995	6,604	7,430										
18,850	18,900	0	3,995	6,604	7,430	408	3,995	6,604	7,430	22,000	22,050	0	3,921	6,506	7,332	167	3,995	6,604	7,430	22,050	22,100	0	3,913	6,496	7,321	163	3,995	6,604	7,430	22,100	22,150	0	3,905	6,485	7,311	160	3,995	6,604	7,430										
18,900	18,950	0	3,995	6,604	7,430	404	3,995	6,604	7,430	22,000	22,050	0	3,913	6,496	7,321	163	3,995	6,604	7,430	22,050	22,100	0	3,913	6,496	7,321	163	3,995	6,604	7,430	22,100	22,150	0	3,905	6,485	7,311	160	3,995	6,604	7,430										
18,950	19,000	0	3,995	6,604	7,430	400	3,995	6,604	7,430	22,000	22,050	0	3,897	6,474	7,300	156	3,995	6,604	7,430	22,050	22,100	0	3,897	6,474	7,300	156	3,995	6,604	7,430	22,100	22,150	0	3,897	6,474	7,300	156	3,995	6,604	7,430										
19,000	19,050	0	3,995	6,604	7,430	397	3,995	6,604	7,430	22,200	22,250	0	3,889	6,464	7,289	152	3,995	6,604	7,430	22,200	22,250	0	3,881	6,453	7,279	148	3,995	6,604	7,430	22,250	22,300	0	3,873	6,443	7,268	144	3,995	6,604	7,430										
19,050	19,100	0	3,995	6,604	7,430	393	3,995	6,604	7,430	22,200	22,250	0	3,889	6,464	7,289	152	3,995	6,604	7,430	22,250	22,300	0	3,881	6,453	7,279	148	3,995	6,604	7,430	22,300	22,350	0	3,873	6,443	7,268	144	3,995	6,604	7,430										
19,100	19,150	0	3,995	6,604	7,430	389	3,995	6,604	7,430	22,200	22,250	0	3,881	6,453	7,279	148	3,995	6,604	7,430	22,250	22,300	0	3,873	6,443	7,268	144	3,995	6,604	7,430	22,300	22,350	0	3,873	6,443	7,268	144	3,995	6,604	7,430										
19,150	19,200	0	3,995	6,604	7,430	385	3,995	6,604	7,430	22,200	22,250	0	3,873	6,443	7,268	144	3,995	6,604	7,430	22,250	22,300	0	3,865	6,432	7,258	140	3,995	6,604	7,430	22,300	22,350	0	3,865	6,432	7,258	140	3,995	6,604	7,430										
19,200	19,250	0	3,995	6,604	7,430	381	3,995	6,604	7,430	22,400	22,450	0	3,857	6,422	7,247	137	3,995	6,604	7,430	22,400	22,450	0	3,849	6,411	7,237	133	3,995	6,604	7,430	22,450	22,500	0	3,841	6,401	7,226	129	3,995	6,604	7,430										
19,250	19,300	0	3,995	6,604	7,430	378	3,995	6,604	7,430	22,400	22,450	0	3,857	6,422	7,247	137	3,995	6,604	7,430	22,450	22,500	0	3,849	6,411	7,237	133	3,995	6,604	7,430	22,500	22,550	0	3,841	6,401	7,226	129	3,995	6,604	7,430										
19,300	19,350	0	3,995	6,604	7,430	374	3,995	6,604	7,430	22,400	22,450	0	3,849	6,411	7,237	133	3,995	6,604	7,430	22,450	22,500	0	3,841	6,401	7,226	129	3,995	6,604	7,430	22,500	22,550	0	3,833	6,390	7,216	125	3,995	6,604	7,430										
19,350	19,400	0	3,995	6,604	7,430	370	3,995	6,604	7,430	22,400	22,450	0	3,841	6,401	7,226	129	3,995	6,604	7,430	22,450	22,500	0	3,833	6,390	7,216	125	3,995	6,604	7,430	22,500	22,550	0	3,833	6,390	7,216	125	3,995	6,604	7,430										
19,400	19,450	0	3,995	6,604	7,430	366	3,995	6,604	7,430	22,600	22,650	0	3,825	6,380	7,205	121	3,995	6,604	7,430	22,600	22,650	0	3,817	6,369	7,195	117	3,995	6,604	7,430	22,650	22,700	0	3,809	6,359	7,184	114	3,995	6,604	7,430										
19,450	19,500	0	3,995	6,604	7,430	362	3,995	6,604	7,430	22,600	22,650	0	3,825	6,380	7,205	121	3,995	6,604	7,430	22,650	22,700	0	3,817	6,369	7,195	117	3,995	6,604	7,430	22,700	22,750	0	3,809	6,359	7,184	114	3,995	6,604	7,430										
19,500	19,550	0	3,995	6,604	7,430	358	3,995	6,604	7,430	22,600	22,650	0	3,817	6,369	7,195	117	3,995	6,604	7,430	22,650	22,700	0	3,809	6,359	7,184	114	3,995	6,604	7,430	22,700	22,750	0	3,801	6,348	7,174	110	3,995	6,604	7,430										
19,550	19,600	0	3,995	6,604	7,430	355	3,995	6,604	7,430	22,600	22,650	0	3,809	6,359	7,184	114	3,995	6,604	7,430	22,650	22,700	0	3,801	6,348	7,174	110	3,995	6,604	7,430	22,700	22,750	0	3,801	6,348	7,174	110	3,995	6,604	7,430										
19,600	19,650	0	3,995	6,604	7,430	351	3,995	6,604	7,430	22,800	22,850	0	3,793	6,338	7,163	106	3,995	6,604	7,430	22,800	22,850	0	3,785	6,327	7,153	102	3,995	6,604	7,430	22,850	22,900	0	3,777	6,317	7,142	98	3,995	6,604	7,430										
19,650	19,700	0	3,995	6,604	7,430	347	3,995	6,604	7,430	22,800	22,850	0	3,793	6,338	7,163	106	3,995	6,604	7,430	22,850	22,900	0	3,785	6,327	7,153	102	3,995	6,604	7,430	22,900	22,950	0	3,777	6,317	7,142	98	3,995	6,604	7,430										
19,700	19,750	0	3,995	6,604	7,430	343	3,995	6,604	7,430	22,800	22,850	0	3,785	6,327	7,153	102	3,995	6,604	7,430	22,850	22,900	0	3,777	6,317	7,142	98	3,995	6,604	7,430	22,900	22,950	0	3,769	6,306	7,132	94	3,995	6,604	7,430										
19,750	19,800	0	3,995	6,604	7,430	339	3,995	6,604	7,430	22,800	22,850	0	3,777	6,317	7,142	98	3,995	6,604	7,430	22,850	22,900	0	3,769	6,306	7,132	94	3,995	6,604	7,430	22,900	22,950	0	3,769	6,306	7,132	94	3,995	6,604	7,430										
19,800	19,850	0	3,995	6,604	7,430	335	3,995	6,604	7,430	23,000	23,050	0	3,761	6,295	7,121	91	3,995	6,604	7,430	23,000	23,050	0	3,753	6,285	7,110	87	3,995	6,604	7,430	23,050	23,100	0	3,745	6,274	7,100	83	3,995	6,604	7,430										
19,850	19,900	0	3,995	6,604	7,430	332	3,995	6,604	7,430	23,000	23,050	0	3,761	6,295	7,121	91	3,995	6,604	7,430	23,050	23,100	0	3,753	6,285	7,110	87	3,995	6,604	7,430	23,100	23,150	0	3,745	6,274	7,100	83	3,995	6,604	7,430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				귀하의 세액공제-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				귀하의 세액공제-													
24,800	24,850	0	3,473	5,916	6,742	0	3,995	6,604	7,430	28,000	28,050	0	2,962	5,242	6,068	0	3,995	6,604	7,430	28,000	28,050	0	2,962	5,242	6,068	0	3,995	6,604	7,430
24,850	24,900	0	3,465	5,906	6,731	0	3,995	6,604	7,430	28,050	28,100	0	2,954	5,232	6,057	0	3,995	6,604	7,430	28,050	28,100	0	2,954	5,232	6,057	0	3,995	6,604	7,430
24,900	24,950	0	3,457	5,895	6,721	0	3,995	6,604	7,430	28,100	28,150	0	2,946	5,221	6,047	0	3,995	6,604	7,430	28,100	28,150	0	2,946	5,221	6,047	0	3,995	6,604	7,430
24,950	25,000	0	3,449	5,885	6,710	0	3,995	6,604	7,430	28,150	28,200	0	2,938	5,211	6,036	0	3,986	6,592	7,418	28,150	28,200	0	2,938	5,211	6,036	0	3,986	6,592	7,418
25,000	25,050	0	3,441	5,874	6,700	0	3,995	6,604	7,430	28,200	28,250	0	2,930	5,200	6,026	0	3,978	6,582	7,407	28,200	28,250	0	2,930	5,200	6,026	0	3,978	6,582	7,407
25,050	25,100	0	3,433	5,864	6,689	0	3,995	6,604	7,430	28,250	28,300	0	2,922	5,190	6,015	0	3,970	6,571	7,397	28,250	28,300	0	2,922	5,190	6,015	0	3,970	6,571	7,397
25,100	25,150	0	3,425	5,853	6,679	0	3,995	6,604	7,430	28,300	28,350	0	2,914	5,179	6,005	0	3,962	6,561	7,386	28,300	28,350	0	2,914	5,179	6,005	0	3,962	6,561	7,386
25,150	25,200	0	3,417	5,843	6,668	0	3,995	6,604	7,430	28,350	28,400	0	2,906	5,169	5,994	0	3,954	6,550	7,376	28,350	28,400	0	2,906	5,169	5,994	0	3,954	6,550	7,376
25,200	25,250	0	3,409	5,832	6,658	0	3,995	6,604	7,430	28,400	28,450	0	2,898	5,158	5,984	0	3,946	6,540	7,365	28,400	28,450	0	2,898	5,158	5,984	0	3,946	6,540	7,365
25,250	25,300	0	3,401	5,822	6,647	0	3,995	6,604	7,430	28,450	28,500	0	2,890	5,148	5,973	0	3,938	6,529	7,355	28,450	28,500	0	2,890	5,148	5,973	0	3,938	6,529	7,355
25,300	25,350	0	3,393	5,811	6,637	0	3,995	6,604	7,430	28,500	28,550	0	2,882	5,137	5,963	0	3,930	6,519	7,344	28,500	28,550	0	2,882	5,137	5,963	0	3,930	6,519	7,344
25,350	25,400	0	3,385	5,801	6,626	0	3,995	6,604	7,430	28,550	28,600	0	2,874	5,127	5,952	0	3,922	6,508	7,334	28,550	28,600	0	2,874	5,127	5,952	0	3,922	6,508	7,334
25,400	25,450	0	3,377	5,790	6,616	0	3,995	6,604	7,430	28,600	28,650	0	2,866	5,116	5,942	0	3,914	6,498	7,323	28,600	28,650	0	2,866	5,116	5,942	0	3,914	6,498	7,323
25,450	25,500	0	3,369	5,780	6,605	0	3,995	6,604	7,430	28,650	28,700	0	2,858	5,106	5,931	0	3,906	6,487	7,313	28,650	28,700	0	2,858	5,106	5,931	0	3,906	6,487	7,313
25,500	25,550	0	3,361	5,769	6,594	0	3,995	6,604	7,430	28,700	28,750	0	2,850	5,095	5,921	0	3,898	6,477	7,302	28,700	28,750	0	2,850	5,095	5,921	0	3,898	6,477	7,302
25,550	25,600	0	3,353	5,758	6,584	0	3,995	6,604	7,430	28,750	28,800	0	2,842	5,085	5,910	0	3,890	6,466	7,292	28,750	28,800	0	2,842	5,085	5,910	0	3,890	6,466	7,292
25,600	25,650	0	3,345	5,748	6,573	0	3,995	6,604	7,430	28,800	28,850	0	2,834	5,074	5,899	0	3,882	6,456	7,281	28,800	28,850	0	2,834	5,074	5,899	0	3,882	6,456	7,281
25,650	25,700	0	3,337	5,737	6,563	0	3,995	6,604	7,430	28,850	28,900	0	2,826	5,063	5,889	0	3,874	6,445	7,270	28,850	28,900	0	2,826	5,063	5,889	0	3,874	6,445	7,270
25,700	25,750	0	3,329	5,727	6,552	0	3,995	6,604	7,430	28,900	28,950	0	2,818	5,053	5,878	0	3,866	6,434	7,260	28,900	28,950	0	2,818	5,053	5,878	0	3,866	6,434	7,260
25,750	25,800	0	3,321	5,716	6,542	0	3,995	6,604	7,430	28,950	29,000	0	2,810	5,042	5,868	0	3,858	6,424	7,249	28,950	29,000	0	2,810	5,042	5,868	0	3,858	6,424	7,249
25,800	25,850	0	3,313	5,706	6,531	0	3,995	6,604	7,430	29,000	29,050	0	2,802	5,032	5,857	0	3,850	6,413	7,239	29,000	29,050	0	2,802	5,032	5,857	0	3,850	6,413	7,239
25,850	25,900	0	3,305	5,695	6,521	0	3,995	6,604	7,430	29,050	29,100	0	2,794	5,021	5,847	0	3,842	6,403	7,228	29,050	29,100	0	2,794	5,021	5,847	0	3,842	6,403	7,228
25,900	25,950	0	3,297	5,685	6,510	0	3,995	6,604	7,430	29,100	29,150	0	2,786	5,011	5,836	0	3,834	6,392	7,218	29,100	29,150	0	2,786	5,011	5,836	0	3,834	6,392	7,218
25,950	26,000	0	3,289	5,674	6,500	0	3,995	6,604	7,430	29,150	29,200	0	2,778	5,000	5,826	0	3,826	6,382	7,207	29,150	29,200	0	2,778	5,000	5,826	0	3,826	6,382	7,207
26,000	26,050	0	3,281	5,664	6,489	0	3,995	6,604	7,430	29,200	29,250	0	2,770	4,990	5,815	0	3,818	6,371	7,197	29,200	29,250	0	2,770	4,990	5,815	0	3,818	6,371	7,197
26,050	26,100	0	3,274	5,653	6,479	0	3,995	6,604	7,430	29,250	29,300	0	2,762	4,979	5,805	0	3,810	6,361	7,186	29,250	29,300	0	2,762	4,979	5,805	0	3,810	6,361	7,186
26,100	26,150	0	3,266	5,643	6,468	0	3,995	6,604	7,430	29,300	29,350	0	2,754	4,969	5,794	0	3,802	6,350	7,176	29,300	29,350	0	2,754	4,969	5,794	0	3,802	6,350	7,176
26,150	26,200	0	3,258	5,632	6,458	0	3,995	6,604	7,430	29,350	29,400	0	2,746	4,958	5,784	0	3,794	6,340	7,165	29,350	29,400	0	2,746	4,958	5,784	0	3,794	6,340	7,165
26,200	26,250	0	3,250	5,622	6,447	0	3,995	6,604	7,430	29,400	29,450	0	2,738	4,948	5,773	0	3,786	6,329	7,155	29,400	29,450	0	2,738	4,948	5,773	0	3,786	6,329	7,155
26,250	26,300	0	3,242	5,611	6,437	0	3,995	6,604	7,430	29,450	29,500	0	2,730	4,937	5,763	0	3,778	6,319	7,144	29,450	29,500	0	2,730	4,937	5,763	0	3,778	6,319	7,144
26,300	26,350	0	3,234	5,600	6,426	0	3,995	6,604	7,430	29,500	29,550	0	2,722	4,927	5,752	0	3,770	6,308	7,134	29,500	29,550	0	2,722	4,927	5,752	0	3,770	6,308	7,134
26,350	26,400	0	3,226	5,590	6,415	0	3,995	6,604	7,430	29,550	29,600	0	2,714	4,916	5,742	0	3,762	6,298	7,123	29,550	29,600	0	2,714	4,916	5,742	0	3,762	6,298	7,123
26,400	26,450	0	3,218	5,579	6,405	0	3,995	6,604	7,430	29,600	29,650	0	2,706	4,906	5,731	0	3,755	6,287	7,113	29,600	29,650	0	2,706	4,906	5,731	0	3,755	6,287	7,113
26,450	26,500	0	3,210	5,569	6,394	0	3,995	6,604	7,430	29,650	29,700	0	2,698	4,895	5,720	0	3,747	6,277	7,102	29,650	29,700	0	2,698	4,895	5,720	0	3,747	6,277	7,102
26,500	26,550	0	3,202	5,558	6,384	0	3,995	6,604	7,430	29,700	29,750	0	2,690	4,884	5,710	0	3,739	6,266	7,091	29,700	29,750	0	2,690	4,884	5,710	0	3,739	6,266	7,091
26,550	26,600	0	3,194	5,548	6,373	0	3,995	6,604	7,430	29,750	29,800	0	2,682	4,874	5,699	0	3,731	6,255	7,081	29,750	29,800	0	2,682	4,874	5,699	0	3,731	6,255	7,081
26,600	26,650	0	3,186	5,537	6,363	0	3,995	6,604	7,430	29,800	29,850	0	2,674	4,863	5,689	0	3,723	6,245	7,070	29,800	29,850	0	2,674	4,863	5,689	0	3,723	6,245	7,070
26,650	26,700	0	3,178	5,527	6,352	0	3,995	6,604	7,430	29,850	29,900	0	2,666	4,853	5,678	0	3,715	6,234	7,060	29,850	29,900	0	2,666	4,853	5,678	0	3,715	6,234	7,060
26,700	26,750	0	3,170	5,516	6,342	0	3,995	6,604	7,430	29,900	29,950	0	2,658	4,842	5,668	0	3,707	6,224	7,049	29,900	29,950	0	2,658	4,842	5,668	0	3,707	6,224	7,049
26,750	26,800	0	3,162	5,506	6,331	0	3,995	6,604	7,430	29,950	30,000	0	2,650	4,832	5,657	0	3,699	6,213	7,039	29,950	30,000	0	2,650	4,832	5,657	0	3,699	6,213	7,039
26,800	26,850	0	3,154	5,495	6,321	0	3,995	6,604	7,430	30,000	30,050	0	2,642	4,821	5,647	0	3,691	6,203	7,028	30,000	30,050	0	2,642	4,821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31,200	31,250	0	2,451	4,569	5,394	0	3,499	5,950	6,776	34,400	34,450	0	1,939	3,895	4,720	0	2,987	5,276	6,102
31,250	31,300	0	2,443	4,558	5,384	0	3,491	5,940	6,765	34,450	34,500	0	1,931	3,884	4,710	0	2,979	5,266	6,091
31,300	31,350	0	2,435	4,547	5,373	0	3,483	5,929	6,755	34,500	34,550	0	1,923	3,874	4,699	0	2,971	5,255	6,081
31,350	31,400	0	2,427	4,537	5,362	0	3,475	5,918	6,744	34,550	34,600	0	1,915	3,863	4,689	0	2,963	5,245	6,070
31,400	31,450	0	2,419	4,526	5,352	0	3,467	5,908	6,733	34,600	34,650	0	1,907	3,853	4,678	0	2,956	5,234	6,060
31,450	31,500	0	2,411	4,516	5,341	0	3,459	5,897	6,723	34,650	34,700	0	1,899	3,842	4,667	0	2,948	5,224	6,049
31,500	31,550	0	2,403	4,505	5,331	0	3,451	5,887	6,712	34,700	34,750	0	1,891	3,831	4,657	0	2,940	5,213	6,038
31,550	31,600	0	2,395	4,495	5,320	0	3,443	5,876	6,702	34,750	34,800	0	1,883	3,821	4,646	0	2,932	5,202	6,028
31,600	31,650	0	2,387	4,484	5,310	0	3,435	5,866	6,691	34,800	34,850	0	1,875	3,810	4,636	0	2,924	5,192	6,017
31,650	31,700	0	2,379	4,474	5,299	0	3,427	5,855	6,681	34,850	34,900	0	1,867	3,800	4,625	0	2,916	5,181	6,007
31,700	31,750	0	2,371	4,463	5,289	0	3,419	5,845	6,670	34,900	34,950	0	1,859	3,789	4,615	0	2,908	5,171	5,996
31,750	31,800	0	2,363	4,453	5,278	0	3,411	5,834	6,660	34,950	35,000	0	1,851	3,779	4,604	0	2,900	5,160	5,986
31,800	31,850	0	2,355	4,442	5,268	0	3,403	5,824	6,649	35,000	35,050	0	1,843	3,768	4,594	0	2,892	5,150	5,975
31,850	31,900	0	2,347	4,432	5,257	0	3,395	5,813	6,639	35,050	35,100	0	1,835	3,758	4,583	0	2,884	5,139	5,965
31,900	31,950	0	2,339	4,421	5,247	0	3,387	5,803	6,628	35,100	35,150	0	1,827	3,747	4,573	0	2,876	5,129	5,954
31,950	32,000	0	2,331	4,411	5,236	0	3,379	5,792	6,618	35,150	35,200	0	1,819	3,737	4,562	0	2,868	5,118	5,944
32,000	32,050	0	2,323	4,400	5,226	0	3,371	5,782	6,607	35,200	35,250	0	1,811	3,726	4,552	0	2,860	5,108	5,933
32,050	32,100	0	2,315	4,390	5,215	0	3,363	5,771	6,597	35,250	35,300	0	1,803	3,716	4,541	0	2,852	5,097	5,923
32,100	32,150	0	2,307	4,379	5,205	0	3,355	5,761	6,586	35,300	35,350	0	1,795	3,705	4,531	0	2,844	5,087	5,912
32,150	32,200	0	2,299	4,368	5,194	0	3,347	5,750	6,576	35,350	35,400	0	1,787	3,695	4,520	0	2,836	5,076	5,902
32,200	32,250	0	2,291	4,358	5,183	0	3,339	5,739	6,565	35,400	35,450	0	1,779	3,684	4,510	0	2,828	5,066	5,891
32,250	32,300	0	2,283	4,347	5,173	0	3,331	5,729	6,554	35,450	35,500	0	1,771	3,674	4,499	0	2,820	5,055	5,881
32,300	32,350	0	2,275	4,337	5,162	0	3,323	5,718	6,544	35,500	35,550	0	1,763	3,663	4,488	0	2,812	5,045	5,870
32,350	32,400	0	2,267	4,326	5,152	0	3,315	5,708	6,533	35,550	35,600	0	1,755	3,652	4,478	0	2,804	5,034	5,859
32,400	32,450	0	2,259	4,316	5,141	0	3,307	5,697	6,523	35,600	35,650	0	1,747	3,642	4,467	0	2,796	5,023	5,849
32,450	32,500	0	2,251	4,305	5,131	0	3,299	5,687	6,512	35,650	35,700	0	1,739	3,631	4,457	0	2,788	5,013	5,838
32,500	32,550	0	2,243	4,295	5,120	0	3,291	5,676	6,502	35,700	35,750	0	1,731	3,621	4,446	0	2,780	5,002	5,828
32,550	32,600	0	2,235	4,284	5,110	0	3,283	5,666	6,491	35,750	35,800	0	1,723	3,610	4,436	0	2,772	4,992	5,817
32,600	32,650	0	2,227	4,274	5,099	0	3,275	5,655	6,481	35,800	35,850	0	1,715	3,600	4,425	0	2,764	4,981	5,807
32,650	32,700	0	2,219	4,263	5,089	0	3,267	5,645	6,470	35,850	35,900	0	1,707	3,589	4,415	0	2,756	4,971	5,796
32,700	32,750	0	2,211	4,253	5,078	0	3,259	5,634	6,460	35,900	35,950	0	1,699	3,579	4,404	0	2,748	4,960	5,786
32,750	32,800	0	2,203	4,242	5,068	0	3,251	5,624	6,449	35,950	36,000	0	1,691	3,568	4,394	0	2,740	4,950	5,775
32,800	32,850	0	2,195	4,232	5,057	0	3,243	5,613	6,439	36,000	36,050	0	1,683	3,558	4,383	0	2,732	4,939	5,765
32,850	32,900	0	2,187	4,221	5,047	0	3,235	5,603	6,428	36,050	36,100	0	1,676	3,547	4,373	0	2,724	4,929	5,754
32,900	32,950	0	2,179	4,211	5,036	0	3,227	5,592	6,418	36,100	36,150	0	1,668	3,537	4,362	0	2,716	4,918	5,744
32,950	33,000	0	2,171	4,200	5,026	0	3,219	5,582	6,407	36,150	36,200	0	1,660	3,526	4,352	0	2,708	4,908	5,733
33,000	33,050	0	2,163	4,189	5,015	0	3,211	5,571	6,397	36,200	36,250	0	1,652	3,516	4,341	0	2,700	4,897	5,723
33,050	33,100	0	2,155	4,179	5,004	0	3,203	5,560	6,386	36,250	36,300	0	1,644	3,505	4,331	0	2,692	4,887	5,712
33,100	33,150	0	2,147	4,168	4,994	0	3,195	5,550	6,375	36,300	36,350	0	1,636	3,494	4,320	0	2,684	4,876	5,702
33,150	33,200	0	2,139	4,158	4,983	0	3,187	5,539	6,365	36,350	36,400	0	1,628	3,484	4,309	0	2,676	4,865	5,691
33,200	33,250	0	2,131	4,147	4,973	0	3,179	5,529	6,354	36,400	36,450	0	1,620	3,473	4,299	0	2,668	4,855	5,680
33,250	33,300	0	2,123	4,137	4,962	0	3,171	5,518	6,344	36,450	36,500	0	1,612	3,463	4,288	0	2,660	4,844	5,670
33,300	33,350	0	2,115	4,126	4,952	0	3,163	5,508	6,333	36,500	36,550	0	1,604	3,452	4,278	0	2,652	4,834	5,659
33,350	33,400	0	2,107	4,116	4,941	0	3,155	5,497	6,323	36,550	36,600	0	1,596	3,442	4,267	0	2,644	4,823	5,649
33,400	33,450	0	2,099	4,105	4,931	0	3,147	5,487	6,312	36,600	36,650	0	1,588	3,431	4,257	0	2,636	4,813	5,638
33,450	33,500	0	2,091	4,095	4,920	0	3,139	5,476	6,302	36,650	36,700	0	1,580	3,421	4,246	0	2,628	4,802	5,628
33,500	33,550	0	2,083	4,084	4,910	0	3,131	5,466	6,291	36,700	36,750	0	1,572	3,410	4,236	0	2,620	4,792	5,617
33,550	33,600	0	2,075	4,074	4,899	0	3,123	5,455	6,281	36,750	36,800	0	1,564	3,400	4,225	0	2,612	4,781	5,607
33,600	33,650	0	2,067	4,063	4,889	0	3,115	5,445	6,270	36,800	36,850	0	1,556	3,389	4,215	0	2,604	4,771	5,596
33,650	33,700	0	2,059	4,053	4,878	0	3,107	5,434	6,260	36,850	36,900	0	1,548	3,379	4,204	0	2,596	4,760	5,586
33,700	33,750	0	2,051	4,042	4,868	0	3,099	5,424	6,249	36,900	36,950	0	1,540	3,368	4,194	0	2,588	4,750	5,575
33,750	33,800	0	2,043	4,032	4,857	0	3,091	5,413	6,239	36,950	37,000	0	1,532	3,358	4,183	0	2,580	4,739	5,565
33,800	33,850	0	2,035	4,021	4,846	0	3,083	5,403	6,228	37,000	37,050	0	1,524	3,347	4,173	0	2,572	4,729	5,554
33,850	33,900	0	2,027	4,010	4,836	0	3,075	5,392	6,217	37,050	37,100	0	1,516	3,337	4,162	0	2,564	4,718	5,544
33,900	33,950	0	2,019	4,000	4,825	0	3,067	5,381	6,207	37,100	37,150	0	1,508	3,326	4,152	0	2,556	4,708	5,533
33,950	34,000	0	2,011	3,989	4,815	0	3,059	5,371	6,196	37,150	37,200	0	1,500	3,315	4,141	0	2,548	4,697	5,523
34,000	34,050	0	2,003	3,979	4,804	0	3,051	5,360	6,186	37,200	37,250	0	1,492	3,305	4,130	0	2,540	4,686	5,512
34,050	34,100	0	1,995	3,968	4,794	0	3,043	5,350	6,175	37,250	37,300	0	1,484	3,294	4,120	0	2,532	4,676	5,501
34,100	34,150	0	1,987	3,958	4,783	0	3,035	5,339	6,165	37,300	37,350	0	1,476	3,284	4,109	0	2,524	4,665	5,491
34,150	34,200	0	1,979	3,947	4,773	0	3,027	5,329	6,154	37,350	37,400	0	1,468	3,273	4,099	0	2,516	4,655	5,480
34,200	34,250	0	1,971	3,937	4,762	0	3,019	5,31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37,600	37,650	0	1,428	3,221	4,046	0	2,476	4,602	5,428	40,800	40,850	0	916	2,547	3,372	0	1,965	3,928	4,754
37,650	37,700	0	1,420	3,210	4,036	0	2,468	4,592	5,417	40,850	40,900	0	908	2,536	3,362	0	1,957	3,918	4,743
37,700	37,750	0	1,412	3,200	4,025	0	2,460	4,581	5,407	40,900	40,950	0	900	2,526	3,351	0	1,949	3,907	4,733
37,750	37,800	0	1,404	3,189	4,015	0	2,452	4,571	5,396	40,950	41,000	0	892	2,515	3,341	0	1,941	3,897	4,722
37,800	37,850	0	1,396	3,179	4,004	0	2,444	4,560	5,386	41,000	41,050	0	884	2,505	3,330	0	1,933	3,886	4,712
37,850	37,900	0	1,388	3,168	3,994	0	2,436	4,550	5,375	41,050	41,100	0	877	2,494	3,320	0	1,925	3,876	4,701
37,900	37,950	0	1,380	3,158	3,983	0	2,428	4,539	5,365	41,100	41,150	0	869	2,484	3,309	0	1,917	3,865	4,691
37,950	38,000	0	1,372	3,147	3,973	0	2,420	4,529	5,354	41,150	41,200	0	861	2,473	3,299	0	1,909	3,855	4,680
38,000	38,050	0	1,364	3,136	3,962	0	2,412	4,518	5,344	41,200	41,250	0	853	2,463	3,288	0	1,901	3,844	4,670
38,050	38,100	0	1,356	3,126	3,951	0	2,404	4,507	5,333	41,250	41,300	0	845	2,452	3,278	0	1,893	3,834	4,659
38,100	38,150	0	1,348	3,115	3,941	0	2,396	4,497	5,322	41,300	41,350	0	837	2,441	3,267	0	1,885	3,823	4,649
38,150	38,200	0	1,340	3,105	3,930	0	2,388	4,486	5,312	41,350	41,400	0	829	2,431	3,256	0	1,877	3,812	4,638
38,200	38,250	0	1,332	3,094	3,920	0	2,380	4,476	5,301	41,400	41,450	0	821	2,420	3,246	0	1,869	3,802	4,627
38,250	38,300	0	1,324	3,084	3,909	0	2,372	4,465	5,291	41,450	41,500	0	813	2,410	3,235	0	1,861	3,791	4,617
38,300	38,350	0	1,316	3,073	3,899	0	2,364	4,455	5,280	41,500	41,550	0	805	2,399	3,225	0	1,853	3,781	4,606
38,350	38,400	0	1,308	3,063	3,888	0	2,356	4,444	5,270	41,550	41,600	0	797	2,389	3,214	0	1,845	3,770	4,596
38,400	38,450	0	1,300	3,052	3,878	0	2,348	4,434	5,259	41,600	41,650	0	789	2,378	3,204	0	1,837	3,760	4,585
38,450	38,500	0	1,292	3,042	3,867	0	2,340	4,423	5,249	41,650	41,700	0	781	2,368	3,193	0	1,829	3,749	4,575
38,500	38,550	0	1,284	3,031	3,857	0	2,332	4,413	5,238	41,700	41,750	0	773	2,357	3,183	0	1,821	3,739	4,564
38,550	38,600	0	1,276	3,021	3,846	0	2,324	4,402	5,228	41,750	41,800	0	765	2,347	3,172	0	1,813	3,728	4,554
38,600	38,650	0	1,268	3,010	3,836	0	2,316	4,392	5,217	41,800	41,850	0	757	2,336	3,162	0	1,805	3,718	4,543
38,650	38,700	0	1,260	3,000	3,825	0	2,308	4,381	5,207	41,850	41,900	0	749	2,326	3,151	0	1,797	3,707	4,533
38,700	38,750	0	1,252	2,989	3,815	0	2,300	4,371	5,196	41,900	41,950	0	741	2,315	3,141	0	1,789	3,697	4,522
38,750	38,800	0	1,244	2,979	3,804	0	2,292	4,360	5,186	41,950	42,000	0	733	2,305	3,130	0	1,781	3,686	4,512
38,800	38,850	0	1,236	2,968	3,793	0	2,284	4,350	5,175	42,000	42,050	0	725	2,294	3,120	0	1,773	3,676	4,501
38,850	38,900	0	1,228	2,957	3,783	0	2,276	4,339	5,164	42,050	42,100	0	717	2,284	3,109	0	1,765	3,665	4,491
38,900	38,950	0	1,220	2,947	3,772	0	2,268	4,328	5,154	42,100	42,150	0	709	2,273	3,099	0	1,757	3,655	4,480
38,950	39,000	0	1,212	2,936	3,762	0	2,260	4,318	5,143	42,150	42,200	0	701	2,262	3,088	0	1,749	3,644	4,470
39,000	39,050	0	1,204	2,926	3,751	0	2,252	4,307	5,133	42,200	42,250	0	693	2,252	3,077	0	1,741	3,633	4,459
39,050	39,100	0	1,196	2,915	3,741	0	2,244	4,297	5,122	42,250	42,300	0	685	2,241	3,067	0	1,733	3,623	4,448
39,100	39,150	0	1,188	2,905	3,730	0	2,236	4,286	5,112	42,300	42,350	0	677	2,231	3,056	0	1,725	3,612	4,438
39,150	39,200	0	1,180	2,894	3,720	0	2,228	4,276	5,101	42,350	42,400	0	669	2,220	3,046	0	1,717	3,602	4,427
39,200	39,250	0	1,172	2,884	3,709	0	2,220	4,265	5,091	42,400	42,450	0	661	2,210	3,035	0	1,709	3,591	4,417
39,250	39,300	0	1,164	2,873	3,699	0	2,212	4,255	5,080	42,450	42,500	0	653	2,199	3,025	0	1,701	3,581	4,406
39,300	39,350	0	1,156	2,863	3,688	0	2,204	4,244	5,070	42,500	42,550	0	645	2,189	3,014	0	1,693	3,570	4,396
39,350	39,400	0	1,148	2,852	3,678	0	2,196	4,234	5,059	42,550	42,600	0	637	2,178	3,004	0	1,685	3,560	4,385
39,400	39,450	0	1,140	2,842	3,667	0	2,188	4,223	5,049	42,600	42,650	0	629	2,168	2,993	0	1,677	3,549	4,375
39,450	39,500	0	1,132	2,831	3,657	0	2,180	4,213	5,038	42,650	42,700	0	621	2,157	2,983	0	1,669	3,539	4,364
39,500	39,550	0	1,124	2,821	3,646	0	2,172	4,202	5,028	42,700	42,750	0	613	2,147	2,972	0	1,661	3,528	4,354
39,550	39,600	0	1,116	2,810	3,636	0	2,164	4,192	5,017	42,750	42,800	0	605	2,136	2,962	0	1,653	3,518	4,343
39,600	39,650	0	1,108	2,800	3,625	0	2,157	4,181	5,007	42,800	42,850	0	597	2,126	2,951	0	1,645	3,507	4,333
39,650	39,700	0	1,100	2,789	3,614	0	2,149	4,171	4,996	42,850	42,900	0	589	2,115	2,941	0	1,637	3,497	4,322
39,700	39,750	0	1,092	2,778	3,604	0	2,141	4,160	4,985	42,900	42,950	0	581	2,105	2,930	0	1,629	3,486	4,312
39,750	39,800	0	1,084	2,768	3,593	0	2,133	4,149	4,975	42,950	43,000	0	573	2,094	2,920	0	1,621	3,476	4,301
39,800	39,850	0	1,076	2,757	3,583	0	2,125	4,139	4,964	43,000	43,050	0	565	2,083	2,909	0	1,613	3,465	4,291
39,850	39,900	0	1,068	2,747	3,572	0	2,117	4,128	4,954	43,050	43,100	0	557	2,073	2,898	0	1,605	3,454	4,280
39,900	39,950	0	1,060	2,736	3,562	0	2,109	4,118	4,943	43,100	43,150	0	549	2,062	2,888	0	1,597	3,444	4,269
39,950	40,000	0	1,052	2,726	3,551	0	2,101	4,107	4,933	43,150	43,200	0	541	2,052	2,877	0	1,589	3,433	4,259
40,000	40,050	0	1,044	2,715	3,541	0	2,093	4,097	4,922	43,200	43,250	0	533	2,041	2,867	0	1,581	3,423	4,248
40,050	40,100	0	1,036	2,705	3,530	0	2,085	4,086	4,912	43,250	43,300	0	525	2,031	2,856	0	1,573	3,412	4,238
40,100	40,150	0	1,028	2,694	3,520	0	2,077	4,076	4,901	43,300	43,350	0	517	2,020	2,846	0	1,565	3,402	4,227
40,150	40,200	0	1,020	2,684	3,509	0	2,069	4,065	4,891	43,350	43,400	0	509	2,010	2,835	0	1,557	3,391	4,217
40,200	40,250	0	1,012	2,673	3,499	0	2,061	4,055	4,880	43,400	43,450	0	501	1,999	2,825	0	1,549	3,381	4,206
40,250	40,300	0	1,004	2,663	3,488	0	2,053	4,044	4,870	43,450	43,500	0	493	1,989	2,814	0	1,541	3,370	4,196
40,300	40,350	0	996	2,652	3,478	0	2,045	4,034	4,859	43,500	43,550	0	485	1,978	2,804	0	1,533	3,360	4,185
40,350	40,400	0	988	2,642	3,467	0	2,037	4,023	4,849	43,550	43,600	0	477	1,968	2,793	0	1,525	3,349	4,175
40,400	40,450	0	980	2,631	3,457	0	2,029	4,013	4,838	43,600	43,650	0	469	1,957	2,783	0	1,517	3,339	4,164
40,450	40,500	0	972	2,621	3,446	0	2,021	4,002	4,828	43,650	43,700	0	461	1,947	2,772	0	1,509	3,328	4,154
40,500	40,550	0	964	2,610	3,435	0	2,013	3,992	4,817	43,700	43,750	0	453	1,936	2,762	0	1,501	3,318	4,143
40,550	40,600	0	956	2,599	3,425	0	2,005	3,981	4,806	43,750	43,800	0	445	1,926	2,751	0	1,493	3,307	4,133
40,600	40,650	0	948	2,589	3,414	0	1,997	3,970	4,796	43,800	43,850	0	437	1,915	2,740	0	1,485	3,297	4,122
40,650	4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44,000	44,050	0	405	1,873	2,698	0	1,453	3,254	4,080	47,200	47,250	0	0	1,199	2,024	0	942	2,580	3,406	47,250	47,300	0	0	1,188	2,014	0	934	2,570	3,395	47,300	47,350	0	0	1,178	2,003	0	926	2,559	3,385	47,350	47,400	0	0	1,167	1,993	0	918	2,549	3,374
44,050	44,100	0	397	1,862	2,688	0	1,445	3,244	4,069	47,400	47,450	0	0	1,157	1,982	0	910	2,538	3,364	47,450	47,500	0	0	1,146	1,972	0	902	2,528	3,353	47,500	47,550	0	0	1,136	1,961	0	894	2,517	3,343	47,550	47,600	0	0	1,125	1,951	0	886	2,507	3,332
44,100	44,150	0	389	1,852	2,677	0	1,437	3,233	4,059	47,600	47,650	0	0	1,115	1,940	0	878	2,496	3,322	47,650	47,700	0	0	1,104	1,930	0	870	2,486	3,311	47,700	47,750	0	0	1,094	1,919	0	862	2,475	3,301	47,750	47,800	0	0	1,083	1,909	0	854	2,465	3,290
44,150	44,200	0	381	1,841	2,667	0	1,429	3,223	4,048	47,800	47,850	0	0	1,073	1,898	0	846	2,454	3,280	47,850	47,900	0	0	1,062	1,888	0	838	2,444	3,269	47,900	47,950	0	0	1,052	1,877	0	830	2,433	3,259	47,950	48,000	0	0	1,041	1,867	0	822	2,423	3,248
44,200	44,250	0	373	1,831	2,656	0	1,421	3,212	4,038	48,000	48,050	0	0	1,030	1,856	0	814	2,412	3,238	48,050	48,100	0	0	1,020	1,845	0	806	2,401	3,227	48,100	48,150	0	0	1,009	1,835	0	798	2,391	3,216	48,150	48,200	0	0	999	1,824	0	790	2,380	3,206
44,250	44,300	0	365	1,820	2,646	0	1,413	3,202	4,027	48,200	48,250	0	0	988	1,814	0	782	2,370	3,195	48,250	48,300	0	0	978	1,803	0	774	2,359	3,185	48,300	48,350	0	0	967	1,793	0	766	2,349	3,174	48,350	48,400	0	0	957	1,782	0	758	2,338	3,164
44,300	44,350	0	357	1,810	2,635	0	1,405	3,191	4,017	48,400	48,450	0	0	946	1,772	0	750	2,328	3,153	48,450	48,500	0	0	936	1,761	0	742	2,317	3,143	48,500	48,550	0	0	925	1,751	0	734	2,307	3,132	48,550	48,600	0	0	915	1,740	0	726	2,296	3,122
44,350	44,400	0	349	1,799	2,625	0	1,397	3,181	4,006	48,600	48,650	0	0	904	1,730	0	718	2,286	3,111	48,650	48,700	0	0	894	1,719	0	710	2,275	3,101	48,700	48,750	0	0	883	1,709	0	702	2,265	3,090	48,750	48,800	0	0	873	1,698	0	694	2,254	3,080
44,400	44,450	0	341	1,789	2,614	0	1,389	3,170	3,996	48,800	48,850	0	0	862	1,687	0	686	2,244	3,069	48,850	48,900	0	0	851	1,677	0	678	2,233	3,058	48,900	48,950	0	0	841	1,666	0	670	2,222	3,048	48,950	49,000	0	0	830	1,656	0	662	2,212	3,037
44,450	44,500	0	333	1,778	2,604	0	1,381	3,160	3,985	49,000	49,050	0	0	820	1,645	0	654	2,201	3,027	49,050	49,100	0	0	809	1,635	0	646	2,191	3,016	49,100	49,150	0	0	799	1,624	0	638	2,180	3,006	49,150	49,200	0	0	788	1,614	0	630	2,170	2,995
44,500	44,550	0	325	1,768	2,593	0	1,373	3,149	3,975	49,200	49,250	0	0	778	1,603	0	622	2,159	2,985	49,250	49,300	0	0	767	1,593	0	614	2,149	2,974	49,300	49,350	0	0	757	1,582	0	606	2,138	2,964	49,350	49,400	0	0	746	1,572	0	598	2,128	2,953
44,550	44,600	0	317	1,757	2,583	0	1,365	3,139	3,964	49,400	49,450	0	0	736	1,561	0	590	2,117	2,943	49,450	49,500	0	0	725	1,551	0	582	2,107	2,932	49,500	49,550	0	0	715	1,540	0	574	2,096	2,922	49,550	49,600	0	0	704	1,530	0	566	2,086	2,911
44,600	44,650	0	309	1,747	2,572	0	1,358	3,128	3,954	49,600	49,650	0	0	694	1,519	0	559	2,075	2,901	49,650	49,700	0	0	683	1,508	0	551	2,065	2,890	49,700	49,750	0	0	672	1,498	0	543	2,054	2,879	49,750	49,800	0	0	662	1,487	0	535	2,043	2,869
44,650	44,700	0	301	1,736	2,561	0	1,350	3,118	3,943	49,800	49,850	0	0	651	1,477	0	527	2,033	2,858	49,850	49,900	0	0	641	1,466	0	519	2,022	2,848	49,900	49,950	0	0	630	1,456	0	511	2,012	2,837	49,950	50,000	0	0	620	1,445	0	503	2,001	2,827
44,700	44,750	0	293	1,725	2,551	0	1,342	3,107	3,932	50,000	50,050	0	0	609	1,435	0	495	1,991	2,816	50,050	50,100	0	0	599	1,424	0	487	1,980	2,806	50,100	50,150	0	0	588	1,414	0	479	1,970	2,795	50,150	50,200	0	0	578	1,403	0	471	1,959	2,785
44,750	44,800	0	285	1,715	2,540	0	1,334	3,096	3,922	50,200	50,250	0	0	567	1,393	0	463	1,949	2,774	50,250	50,300	0	0	557	1,382	0	455	1,938	2,764	50,300	50,350	0	0	546	1,372	0	447	1,928	2,753	50,350	50,400	0	0	536	1,361	0	439	1,917	2,743
44,800	44,850	0	277	1,704	2,530	0	1,326	3,086	3,911	50,400	50,450	0	0	525	1,371	0	445	1,917	2,743	50,450	50,500	0	0	515	1,360	0	437	1,906	2,732	50,500	50,550	0	0	504	1,350	0	429	1,895	2,722	50,550	50,600	0	0	494	1,340	0	421	1,884	2,711
44,850	44,900	0	269	1,694	2,519	0	1,318	3,075	3,901	50,600	50,650	0	0	483	1,329	0	421	1,884	2,711	50,650	50,700	0	0	473	1,318	0	413	1,873	2,701	50,700	50,750	0	0	462	1,308	0	413	1,862	2,690	50,750	50,800	0	0	452	1,297	0	405	1,851	2,680
44,900	44,950	0	261	1,683	2,509	0	1,310	3,065	3,890	50,800	50,850	0	0	441	1,317	0	401	1,873	2,701	50,850	50,900	0	0	431	1,306	0	401	1,862	2,690	50,900	50,950	0	0	420	1,296	0	393	1,851	2,680	50,950	51,000	0	0	410	1,285	0	385	1,840	2,670
44,950	45,000	0	253	1,673	2,498	0	1,302	3,054	3,880	51,000	51,050	0	0	400	1,306	0	393	1,851	2,670	51,050	51,100	0	0	389	1,295	0	385	1,840	2,660	51,100	51,150	0	0	378	1,285	0	377	1,830	2,650	51,150	51,200	0	0	368	1,274	0	369	1,819	2,640
45,000	45,050	0	245	1,662	2,488	0	1,294	3,044	3,869	51,200	51,250	0	0	367	1,273	0	377	1,830	2,640	51,250	51,300	0	0	357	1,262	0	369	1,819	2,630	51,300	51,350	0	0	346	1,252	0	361	1,808	2,620	51,350	51,400	0	0	336	1,241	0	353	1,797	2,610
45,050	45,100	0	237	1,652	2,477	0	1,286	3,033	3,859	51,400	51,450	0	0	326	1,262	0	353	1,820	2,630	51,450	51,500	0	0	316	1,251	0	353	1,810	2,620	51,500	51,550	0	0	305	1,241	0	347	1,800	2,610	51,550	51,600	0	0	295	1,230	0	339	1,789	2,600
45,100	45,150	0	229	1,641	2,467	0	1,278	3,023	3,848	51,600	51,650	0	0	285	1,251	0	339	1,810	2,620	51,650	51,700	0	0	275	1,240	0	339	1,800	2,610	51,700	51,750	0	0	264	1,230	0	331	1,790	2,600	51,750	51,800	0	0	254	1,219	0	323	1,779	2,590
45,150	45,200	0	221	1,631	2,456	0	1,270	3,012	3,838	51,800	51,850	0	0	244	1,230	0	323	1,800	2,610	51,850	51,900	0	0	234	1,219	0	323	1,790	2,600	51,900	51,950	0	0	223	1,209	0	315	1,780	2,590	51,950	52,000	0	0	213	1,198	0	307	1,769	2,580
45,200	45,250	0	213	1,620	2,446	0	1,262	3,002	3,827	52,000	52,050	0	0	203	1,219	0	307	1,790	2,580	52,050	52,100	0	0	193	1,208	0	307	1,780	2,570	52,100	52,150	0	0	192	1,198	0	299	1,770	2,570	52,150	52,200	0	0	182	1,187	0	291	1,759	2,560
45,250	45,300	0	205	1,610	2,435	0	1,254	2,991	3,817	52,200	52,250	0	0	182	1,198	0	291	1,770	2,560	52,250	52,300	0	0	172	1,187	0	291	1,760	2,550	52,300	52,350	0	0	171	1,187	0	283	1,750	2,550	52,350	52,400	0	0	161	1,176	0	275	1,739	2,540
45,300	45,350	0	197	1,599	2,425	0	1,246	2,981	3,806	52,400	52,450	0	0	161	1,176	0	275	1,750	2,540	52,450	52,500	0	0	151	1,165	0	275	1,740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56,000	56,050	0	0	0	171	0	0	727	1,553	59,200	59,250	0	0	0	0	0	0	0	0	53	879
56,050	56,100	0	0	0	161	0	0	717	1,542	59,250	59,300	0	0	0	0	0	0	0	0	43	868
56,100	56,150	0	0	0	150	0	0	706	1,532	59,300	59,350	0	0	0	0	0	0	0	0	32	858
56,150	56,200	0	0	0	140	0	0	696	1,521	59,350	59,400	0	0	0	0	0	0	0	0	22	847
56,200	56,250	0	0	0	129	0	0	685	1,511	59,400	59,450	0	0	0	0	0	0	0	0	11	837
56,250	56,300	0	0	0	119	0	0	675	1,500	59,450	59,500	0	0	0	0	0	0	0	0	**	826
56,300	56,350	0	0	0	108	0	0	664	1,490	59,500	59,550	0	0	0	0	0	0	0	0	0	816
56,350	56,400	0	0	0	97	0	0	653	1,479	59,550	59,600	0	0	0	0	0	0	0	0	0	805
56,400	56,450	0	0	0	87	0	0	643	1,468	59,600	59,650	0	0	0	0	0	0	0	0	0	795
56,450	56,500	0	0	0	76	0	0	632	1,458	59,650	59,700	0	0	0	0	0	0	0	0	0	784
56,500	56,550	0	0	0	66	0	0	622	1,447	59,700	59,750	0	0	0	0	0	0	0	0	0	773
56,550	56,600	0	0	0	55	0	0	611	1,437	59,750	59,800	0	0	0	0	0	0	0	0	0	763
56,600	56,650	0	0	0	45	0	0	601	1,426	59,800	59,850	0	0	0	0	0	0	0	0	0	752
56,650	56,700	0	0	0	34	0	0	590	1,416	59,850	59,900	0	0	0	0	0	0	0	0	0	742
56,700	56,750	0	0	0	24	0	0	580	1,405	59,900	59,950	0	0	0	0	0	0	0	0	0	731
56,750	56,800	0	0	0	13	0	0	569	1,395	59,950	60,000	0	0	0	0	0	0	0	0	0	721
56,800	56,850	0	0	0	*	0	0	559	1,384	60,000	60,050	0	0	0	0	0	0	0	0	0	710
56,850	56,900	0	0	0	0	0	0	548	1,374	60,050	60,100	0	0	0	0	0	0	0	0	0	700
56,900	56,950	0	0	0	0	0	0	538	1,363	60,100	60,150	0	0	0	0	0	0	0	0	0	689
56,950	57,000	0	0	0	0	0	0	527	1,353	60,150	60,200	0	0	0	0	0	0	0	0	0	679
57,000	57,050	0	0	0	0	0	0	517	1,342	60,200	60,250	0	0	0	0	0	0	0	0	0	668
57,050	57,100	0	0	0	0	0	0	506	1,332	60,250	60,300	0	0	0	0	0	0	0	0	0	658
57,100	57,150	0	0	0	0	0	0	496	1,321	60,300	60,350	0	0	0	0	0	0	0	0	0	647
57,150	57,200	0	0	0	0	0	0	485	1,311	60,350	60,400	0	0	0	0	0	0	0	0	0	637
57,200	57,250	0	0	0	0	0	0	474	1,300	60,400	60,450	0	0	0	0	0	0	0	0	0	626
57,250	57,300	0	0	0	0	0	0	464	1,289	60,450	60,500	0	0	0	0	0	0	0	0	0	616
57,300	57,350	0	0	0	0	0	0	453	1,279	60,500	60,550	0	0	0	0	0	0	0	0	0	605
57,350	57,400	0	0	0	0	0	0	443	1,268	60,550	60,600	0	0	0	0	0	0	0	0	0	594
57,400	57,450	0	0	0	0	0	0	432	1,258	60,600	60,650	0	0	0	0	0	0	0	0	0	584
57,450	57,500	0	0	0	0	0	0	422	1,247	60,650	60,700	0	0	0	0	0	0	0	0	0	573
57,500	57,550	0	0	0	0	0	0	411	1,237	60,700	60,750	0	0	0	0	0	0	0	0	0	563
57,550	57,600	0	0	0	0	0	0	401	1,226	60,750	60,800	0	0	0	0	0	0	0	0	0	552
57,600	57,650	0	0	0	0	0	0	390	1,216	60,800	60,850	0	0	0	0	0	0	0	0	0	542
57,650	57,700	0	0	0	0	0	0	380	1,205	60,850	60,900	0	0	0	0	0	0	0	0	0	531
57,700	57,750	0	0	0	0	0	0	369	1,195	60,900	60,950	0	0	0	0	0	0	0	0	0	521
57,750	57,800	0	0	0	0	0	0	359	1,184	60,950	61,000	0	0	0	0	0	0	0	0	0	510
57,800	57,850	0	0	0	0	0	0	348	1,174	61,000	61,050	0	0	0	0	0	0	0	0	0	500
57,850	57,900	0	0	0	0	0	0	338	1,163	61,050	61,100	0	0	0	0	0	0	0	0	0	489
57,900	57,950	0	0	0	0	0	0	327	1,153	61,100	61,150	0	0	0	0	0	0	0	0	0	479
57,950	58,000	0	0	0	0	0	0	317	1,142	61,150	61,200	0	0	0	0	0	0	0	0	0	468
58,000	58,050	0	0	0	0	0	0	306	1,132	61,200	61,250	0	0	0	0	0	0	0	0	0	458
58,050	58,100	0	0	0	0	0	0	295	1,121	61,250	61,300	0	0	0	0	0	0	0	0	0	447
58,100	58,150	0	0	0	0	0	0	285	1,110	61,300	61,350	0	0	0	0	0	0	0	0	0	437
58,150	58,200	0	0	0	0	0	0	274	1,100	61,350	61,400	0	0	0	0	0	0	0	0	0	426
58,200	58,250	0	0	0	0	0	0	264	1,089	61,400	61,450	0	0	0	0	0	0	0	0	0	415
58,250	58,300	0	0	0	0	0	0	253	1,079	61,450	61,500	0	0	0	0	0	0	0	0	0	405
58,300	58,350	0	0	0	0	0	0	243	1,068	61,500	61,550	0	0	0	0	0	0	0	0	0	394
58,350	58,400	0	0	0	0	0	0	232	1,058	61,550	61,600	0	0	0	0	0	0	0	0	0	384
58,400	58,450	0	0	0	0	0	0	222	1,047	61,600	61,650	0	0	0	0	0	0	0	0	0	373
58,450	58,500	0	0	0	0	0	0	211	1,037	61,650	61,700	0	0	0	0	0	0	0	0	0	363
58,500	58,550	0	0	0	0	0	0	201	1,026	61,700	61,750	0	0	0	0	0	0	0	0	0	352
58,550	58,600	0	0	0	0	0	0	190	1,016	61,750	61,800	0	0	0	0	0	0	0	0	0	342
58,600	58,650	0	0	0	0	0	0	180	1,005	61,800	61,850	0	0	0	0	0	0	0	0	0	331
58,650	58,700	0	0	0	0	0	0	169	995	61,850	61,900	0	0	0	0	0	0	0	0	0	321
58,700	58,750	0	0	0	0	0	0	159	984	61,900	61,950	0	0	0	0	0	0	0	0	0	310
58,750	58,800	0	0	0	0	0	0	148	974	61,950	62,000	0	0	0	0	0	0	0	0	0	300
58,800	58,850	0	0	0	0	0	0	138	963	62,000	62,050	0	0	0	0	0	0	0	0	0	289
58,850	58,900	0	0	0	0	0	0	127	952	62,050	62,100	0	0	0	0	0	0	0	0	0	279
58,900	58,950	0	0	0	0	0	0	116	942	62,100	62,150	0	0	0	0	0	0	0	0	0	268
58,950	59,000	0	0	0	0	0	0	106	931	62,150	62,200	0	0	0	0	0	0	0	0	0	258
59,000	59,050	0	0	0	0	0	0	95	921	62,200	62,250	0	0	0	0	0	0	0	0	0	247
59,050	59,100	0	0	0	0	0	0	85	910	62,250	62,300	0	0	0	0	0	0	0	0	0	236
59,100	59,150	0	0	0	0	0	0	74	900	62,300	62,350	0	0	0	0	0	0	0	0	0	226
59,150	59,200	0	0	0	0	0	0	64	889	62,350	62,400	0	0	0	0	0	0	0	0	0	215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 열을 사용하십시오.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6,800 이상 \$56,838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4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6,838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9,450 이상 \$59,478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3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59,478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됨)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62,400	62,450	0	0	0	0	0	0	0	205
62,450	62,500	0	0	0	0	0	0	0	194
62,500	62,550	0	0	0	0	0	0	0	184
62,550	62,600	0	0	0	0	0	0	0	173
62,600	62,650	0	0	0	0	0	0	0	163
62,650	62,700	0	0	0	0	0	0	0	152
62,700	62,750	0	0	0	0	0	0	0	142
62,750	62,800	0	0	0	0	0	0	0	131
62,800	62,850	0	0	0	0	0	0	0	121
62,850	62,900	0	0	0	0	0	0	0	110
62,900	62,950	0	0	0	0	0	0	0	100
62,950	63,000	0	0	0	0	0	0	0	89
63,000	63,050	0	0	0	0	0	0	0	79
63,050	63,100	0	0	0	0	0	0	0	68
63,100	63,150	0	0	0	0	0	0	0	57
63,150	63,200	0	0	0	0	0	0	0	47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63,200	63,250	0	0	0	0	0	0	0	36
63,250	63,300	0	0	0	0	0	0	0	26
63,300	63,350	0	0	0	0	0	0	0	15
63,350	63,400	0	0	0	0	0	0	0	*

★ 귀하의 납세자 구분기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 열을 사용하십시오.

-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3,350 이상 \$63,398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5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3,398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

EIC 불허 [17](#)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 [16](#), [17](#)
 EITC 도우미 [3](#)

S

SSN [4](#), [10](#), [18](#)

ㄱ

간행물 (세금 관련 도움말 [참고](#))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4](#)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가지고 있을 때 [10](#)
 거주지 테스트 (적격 자녀 [참고](#))
 공동 신고서 (적격 자녀 [참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자 [5](#)
 공동 재산 [4](#)
 관계 테스트 (적격 자녀 [참고](#))
 군대 [8](#), [10](#), [16](#)
 미국 외 지역 [10](#)
 비과세급여 [8](#)
 전투 수당 [8](#)
 근로 소득 [7](#)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8](#)
 근로자 상해보험 혜택 [8](#)
 근로장려금 [8](#)
 급여, 임금, 팁 [7](#), [16](#)
 기혼 자녀 [10](#)

L

납세자 구분:
 부부 개별 신고 [5](#)
 세대주 [5](#)
 납세자 식별 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4](#)
 사회 보장 번호 (SSN) [4](#)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 [10](#), [11](#)
 납세자의 사망 [14](#)
 네바다주 동거자 [8](#)
 노숙자 [10](#), [16](#)

C

동거자 [8](#)
 등록된 동거자 [8](#)

Q

목사 [7](#), [16](#)
 미국 [10](#)

B

배당금 소득 [8](#)
 배우자의 사망 [14](#)
 법정 직원 [7](#), [16](#), [17](#)
 별거 중인 부모, 특별 규칙 [10](#)

보존유보계획 지급금 [8](#)

보훈 혜택 [8](#)
 복지 혜택 [8](#)
 부모, 이혼 또는 별거 [10](#), [12](#), [13](#)
 부부 공동 재산 [8](#)
 부식기본수당 (BAS) [8](#)
 비거주자 [5](#), [19](#)

ㅅ

사기 [18](#), [19](#)
 사회 보장 번호 (SSN) [5](#)
 사회 보장 혜택 [8](#)
 상세한 예시 [19](#)
 성직자 [16](#)
 세금 관련 도움말 [19](#)
 세대주 [4](#), [8](#), [11](#)
 수감자 [8](#)
 순이익, 자영업 [7](#)
 스케줄:
 C [17](#)
 C-EZ [17](#)
 EIC [8](#), [10](#), [16](#), [17](#)
 SE [16](#), [17](#)
 실업 수당 [8](#)

O

알림 [3](#)
 양식:
 1040 [2](#), [4](#), [5](#)
 1040X [4](#)
 2555 [5](#)
 2555-EZ [5](#)
 4029 [7](#), [8](#)
 4361 [7](#), [8](#)
 4797 [2](#)
 8814 [2](#)
 8862 [17](#), [18](#)
 연금 [8](#)
 연령 테스트 (적격 자녀 [참고](#))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9](#)
 예시, 상세한 [19](#)
 온라인 도움말:
 EITC 도우미 [3](#)
 워싱턴주 동거자 [8](#)
 위자료 [8](#)
 위탁 자녀 [9](#), [13](#), [15](#)
 위탁 지급금 [8](#)
 위험 지역 특별 수당 [16](#)
 유괴된 자녀 [10](#)
 이자 [8](#)
 이혼한 부모, 특별 규칙 [13](#)
 임금, 급여, 팁 [7](#), [16](#)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 [10](#), [11](#)
 입양 자녀 [9](#)

ㅈ

자녀:
 기혼 자녀 [10](#)
 위탁 자녀 [9](#), [13](#), [15](#)
 유괴된 자녀 [10](#)
 입양 자녀 [9](#)
 출생 또는 사망 [10](#)
 자녀 양육비 [8](#)
 자녀의 사망 [10](#)
 자녀의 출생 [10](#)
 자영업 세금 [17](#)
 자영업 소득 [16](#)
 자영업자 [7](#), [16](#), [17](#)
 작업표 1 [6](#)
 작업표 2 [7](#)
 장애 [9](#)
 장애 급여 [8](#)
 적격 자녀 [2](#), [8](#)
 거주지 테스트 [10](#)
 공동 신고서 테스트 [9](#)
 관계 테스트 [9](#)
 미국 [10](#)
 연령 테스트 [9](#)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9](#)
 집 [10](#)
 주택기본수당 (BAH) [8](#)
 지원 (세금 관련 도움말 [참고](#))
 집:
 군대 [16](#)
 노숙자 보호소 [16](#)
 미국 [16](#)

ㅊ

철도퇴직 혜택 [8](#)

ㅋ

캘리포니아주 동거자 [8](#)

ㅌ

타이브레이커 규칙 [11](#)
 투자 소득 [5](#)
 팁, 임금, 급여 [7](#), [16](#)

ㅍ

파업 혜택 [7](#)
 파트너, 동거 [8](#)
 피동 활동 [6](#)

ㅎ

학교 [9](#)
 학생 [9](#)
 현역 복무 연장 [10](#), [16](#)